
어린이 식생활안전의 주요 과제와 종합계획 수립 방향 에 관한 정책 토론회

- 일시 : 2009년 7월 15일(수)~16일(목)
- 장소 : 대전 유성 레전드호텔

주최: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토론회 일정

□ 제1일: 7월 15일 (수)

- 12:00 ~ 14:00 등록 및 점심식사
- 14:00 ~ 14:10 인사말 (홍진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생활안전과장)

▶ 제 1부. 주제 발표

좌장 : 문현경 (단국대 교수)

- 14:15 ~ 14:35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련 주요 선진국의 정책 동향
(곽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14:35 ~ 15:15 어린이 식생활 안전의 주요 과제와 종합계획 구상 방향
(김혜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15:15 ~ 15:30 Coffee Break
- 15:30 ~ 16:15 토 론
 - 강명희 (한국영양학회 회장)
 - 강재현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교수)
 - 김승호 (서울시 식품안전팀장)
 - 김초일 (어린이먹거리안전관리사업단장)
 - 송성완 (한국식품공협협회 업무부장)
 - 이정기 (경북 식약품안전팀 사무관)
- 16:15 ~ 16:45 종합 토론
- 16:45 ~ 17:00 Coffee Break

▶ 제 2부. 주요 전략 영역별 분임 토의

- 17:00 ~ 18:40 분임 토의
 - 1분임 :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위생관리 부문
 - 2분임 : 어린이 식생활 교육홍보 부문
 - 3분임 : 안전한 식품공급 부문
 - 4분임 : 종합계획(안) 틀, 제도 기반 및 평가모니터링 부문
- 18:40 저녁식사

□ 제2일: 7월 16일 (목)

○ 8:00 ~ 9:00 아침식사

▶ 분임 토의 결과 발표 및 종합 토의	좌장 : 최영선 (대구대 교수)
-----------------------	-------------------

- | | |
|--------------|--------------------------------------|
| 9:00 ~ 11:00 | - 1분임 :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위생관리 부문 |
| | - 2분임 : 어린이 식생활 교육홍보 부문 |
| | - 3분임 : 안전한 식품공급 부문 |
| | - 4분임 : 종합계획(안) 틀, 제도 기반 및 평가모니터링 부문 |
| 11:00 | 폐회 |

목 차

주제발표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련 주요 선진국의 정책 동향	1
곽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의 주요 과제와 종합계획 구상 방향	19
김혜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토론문

강명희 [한국영양학회 회장]	79
강재현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교수]	83
김승호 [서울시 식품안전팀장]	85
김초일 [어린이먹거리안전관리사업단장]	88
송성완 [한국식품공업협회 업무부장]	90
이정기 [경북 식약품안전팀 사무관]	93
분임토의 안내	99

제1 주제 :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련
주요 선진국의 정책동향

곽 노 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입법 추진 동향

가. 영국

☐ Children's Food Bill (2005년)

- 주요내용
 - 어린이 대상 특정 식품과 음료수에 대한 마케팅 금지
 - 어린이 대상 특정 식품과 음료수 섭취 장려
 - 식품 교육(food education)
 - 학교에서의 식품과 음료 판매 또는 제공 제한
- 추진 경과 : 별도 입법 없이 행정조치
 - 마케팅 관련 사항은 방송광고, 비방송광고 자율규제기관에서 반영, 시행
 - 학교 관련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수용

☐ Food Products(Marketing to Children) Bill (2008년)

- 취지
 - 방송광고, 비방송광고 규제기관이 각각 규제를 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한 논란 지속되면서 단일 규제를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법안 발의
- 주요 내용
 - 방송광고의 경우,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9시 사이에 덜 건강한(less healthy) 식품에 대한 광고 금지
 - 비방송광고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덜 건강한 식품의 판촉행위 금지

<마케팅의 종류>

- advertising and television and film
- Packaging and sales promotion
- Internet marketing
- In-school marketing
- Sponsorship
- Product placement : 예) 극장에 자판기 배치

나. 미국

□ 연방법안(Stop Obesity in Schools Act of 2007)

- 입법내용
 - 어린이 비만 감소를 위한 국가 전략 수립
 - 비만 관련 지역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 비만 관련 사업 평가
 - 건강한 생활 조정위원회 운영

□ 주법안 (2007년 12월 기준 35개 주)

- 입법내용
 - 학교의 영양표준 설정, 영양교육, 비만지수(BMI)와 체격 스크리닝
 - 자판기 제거 등 학교 내 비만 유발 식품 규제, 학교 행사에서 판매되는 식품 형태 규제
 - 영양함량 정보, portion sizes 제한 등

다. 호주

□ 연방법안 통과 실패(09.4)

- 법안명 : Protecting Children from Junk Food Advertising (Broadcasting Amendment) Bill 2008
- 주요내용
 - 정크푸드의 어린이 시청 시간대 텔레비전 광고 금지
 - 식품광고를 하는 학교 등에 대한 재정 지원 등

라. 일본

□ 식육기본법을 통한 어린이 식생활 교육

- 식육기본법은 내각부가 중심이 2005년 6월 제정되었고, 2006년 9월에는 식육추진기본계획 수립
 - 식육추진체계는 내각부,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과 함께 도도부현, 시정촌과 식품사업자, 농림어업자, 교육·보육·의료·보건 관계자와 각종단체가 참여하여 국민운동으로 전개
- 식육추진의 기본 방침
 - ① 국민의 심신의 건강의 증진과 풍부한 인간 형성

- ② 음식에 관한 감사와 이해
- ③ 식육추진운동의 전개
- ④ 아동의 식육에서 보호자, 교육관계자의 역할
- ⑤ 음식에 관한 체험활동과 식육추진 활동의 실천
- ⑥ 전통적인 식생활 문화의 계승,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료 생산 도모
- ⑦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서의 식육의 역할

2. 주요 제도 비교

가. 학교 내 관리

□ WHO

- School Policy framework Implementation of the WHO Global Strategy on Diet,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2008)
 - WHO는 정책 옵션 중 food service 환경 측면에서 간이매점과 자판기를 통한 고열량·저영양 식음료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제한하는 식품·음료 기준 설정 필요성 제기
 - 학교 식음료 영양 표준 또는 학령기 아동을 위한 국가 식이 지침에 부합할 것
 - 우유, 무가당 요구르트, 생수, 무가당 주스, 샌드위치,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로 대체할 것을 장려함.
 - 이 정책 옵션 실행을 위한 권고사항(Sugges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policy option)은 다음과 같음
 - ① 학교가 문구나 잡지 판매와 같은 문화적으로 적절한 대체 수익 원천을 찾는 것을 장려
 - ②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음료 선택이 가장 경제적인 품목이 되게 하거나 자판기의 내용물을 개선하는 학교를 보상하는 재정적 대책 사용을 장려
 - ③ 자판기나 간이매점을 통해 제공되는 고영양·저열량 식음료의 이용성을 제한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학교 시설에서 자판기를 없애는 것을 장려

□ 미국

- 학교 식품 표준(School Nutrition Standards)을 주정부에서 설정
 - 근거 : Child Nutrition and WIC Reauthorization Act of 2004의 School Wellness Policy의 의무사항
 - USDA에서 비타민·무기질 등 영양성분이 거의 없는 식품을 ‘최소 영양가식

품'(Foods of Minimal Nutritional Value; FMNV) 이라 칭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학교 내 판매 제한

- 2008년도에 6개 주가 학교 영양 표준에 관한 입법을 추가하여 2008년 12월말 현재 총 31개 주에서 학교 영양 표준 제정과 관련 입법을 시행중임.
- ① Indiana주는 학교에서 판매되는 식품 항목 중 적어도 50%가 “더 나은 식품 선택”의 품질을 갖추도록 요구함

<“더 나은 식품 선택”의 영양성분 기준>

- 지방 기준: 지방 유래 칼로리가 총 칼로리의 30%를 넘지 않고,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가 총 칼로리의 10%를 넘지 않음.
- 당류 기준: 과일, 채소 또는 유제품에서 가당 유래 중량이 35%를 넘지 않음¹⁾

② California주는 USDA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 초등 및 중학교에서 판매가능한 음료리스트 조정 및 고등학교에서 특정 시간대에 음료 판매를 제한
- 초등학교에서는 수업일 중 full meals만 판매해야 함.
- 간식으로 견과류, 달걀, 치즈, 과일, 튀기지 않은 채소, 콩류 등을 1인분 개별 포장 판매 명령
-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 프로그램(NSLP) 제공되는 음식에 대해 인공 트랜스 지방과 deep fried, flash fried 또는 par fried 금지
- 2009년 7월 1일자로 모든 학교와 학군(school districts)에서 자판기와 학교 식당(school food service establishments)에서 제공되는 식품에서 모든 종류(sources)의 트랜스지방을 제거할 것을 요청

□ 영국

- FSA는 새로운 학교 식품 표준(School Food Standards)에서 자판기, 학교 매점(tuckshop)에 대한 표준을 규정
- 2005년 영국 정부는 전문가 그룹의 School Meals Review Panel(SMRP)을 임명하였고, 새로운 학교 식품 표준을 권고
- 식품기준 표준:
 - HFSS 식품 제한: 육류와 지방·기름으로 조리된 전분음식의 제공 횟수, 튀긴 음식·소금과 조미료·스낵·케이크와 비스킷 제한, 과자류 금지(No

1) 천연당 이외의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Confectionery)

- 과일과 채소의 portion과 이용성 제고
- 생수와 건강음료에 대한 규정
- 영양소기준 표준: 열량을 포함한 14가지의 영양소 기준 표준이 있음
 - 에너지는 평균을 기초로 함
 - 하한선(minimum level)이 설정된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섬유소, 비타민 A, 비타민 C, 엽산, 칼슘, 철, 아연
 - 상한선(maximum level)이 설정된 영양소: 지방, 포화지방, 비유당 당류(NME Sugars), 소디움

○ 구내 과일 판매점 운영(Fruit Tuck Shop Scheme)

- 어린이들 자신의 식사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과일을 더 많이 먹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England와 Wales에서 Fruit Tuck Shop Scheme을 시범사업으로 실시
- FSA Wales에서 발행한 A practical guide to planning and running a school fruit tuck shop에서 초등학교에서의 과일 tuck shop 운영에 관한 실제적인 팁을 제공
- Tuckshop 운영의 이득
 - 아동 청소년의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의 섭취 증대, 당분이 많은 스낵 대체
 - 학생들에게 과일 판매와 구매의 즐거움 제공하고, 학교 교과과정을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며, 연대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천 기회 제공
 - ※ 판매가능 과일과 주스: 사과, 바나나, 오렌지, 자두, 배, 키위, 리치 등 딱딱한 과일(쉽게 물러지지 않는 과일)

☐ 프랑스

- 2005년 9월 프랑스 정부는 아동 비만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판기를 통한 식음료의 판매를 금지함

☐ 호주

○ Nutrition Australia의 ‘Go for your life’ Healthy Canteen Kit

- 학교에서 제공 가능한 식품을 3가지 범주(green, amber, red)로 구분한 food-based guideline
- 2007년부터 고당류 탄산음료는 school food services를 통한 공급 금지
 - ※ 고당류 탄산음료에 설탕함량이 높은 에너지 음료와 높은 향첨가 생수 포함됨
- Confectionery는 고열량·최소영양가식품이므로 공립학교의 food services를 통한 confectionery 판매 금지
 - ※ 2007-2009년에 단계적으로 금지, 2009년 1학기부터 모든 confectionery 제공 금지

표 4-3. 선진국의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영양기준 설정 권장 사례

국가	영양 기준
미국	○ 관련 법률 : 7 CFR Part 210, 220 (USDA 규정) - 식사시간 동안 학교의 food service 지역에서 급식과 경쟁적인 식음료 중 최소영양가 식품 (Foods of minimum nutritional value ; FMNV)* 판매를 금지함. ○ 영양 기준 - 100kcal 및 1인분 당 모두 단백질, 비타민 A, C, 나이아신, B1, B2, 칼슘, 철이 일일 권장섭취량(RDI) 5% 이하인 식품 (단, 인공감미된 식품은 1인분 당 기준만 적용) ○ 식품 유형 - Soda water(탄산음료), Water Ices(과일·과일주스 함유제품 제외), 츄잉껌, 특정 캔디류 (hard candy, jellies, marshmallow, licorice 등) ○ 참고사항 - 모든 주는 최소 USDA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07년 현재 50개 중 32개 주가 판매 제한 식품의 범위 및 기준, 판매장소 및 시간 등을 더 강화하여 시행
미국 캘리포니아	○ 영양 기준 - 지방 유래열량은 총 열량의 35% 미만 (견과류 제외), 포화지방 유래열량은 총 열량의 10% 미만, 당류는 총 중량의 35% 미만 (과일, 채소 제외)인 과일, 비건조 채소, 콩류, 음료, 유제품, 곡류제품 판매 가능 - 음료는 물, 우유, 주스 (당 첨가량은 50%이상 과채음료)만 판매 가능
미국 인디애나	○ 영양 기준 - 지방 유래 열량은 총 열량의 30% 미만,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유래 열량은 총 열량의 10% 미만, 당류는 과일, 채소, 또는 유제품의 천연당 이외의 당류 유래 중량이 35% 미만
영국 Ofcom	○ 목적 -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지방·나트륨·당류' 식품에 대해 오후 9시 이전의 광고를 제한하기 위함 ○ 영양 기준 - 총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총당류 및 과일, 채소, 견과류, 식이섬유 함량 정도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총점수로 평가
영국 School Food Standard	○ 영양소 기준 점심 표준 - 에너지는 평균을 기초로 한다, - 하한선(minimum level)이 설정된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섬유소, 비타민A, 비타민C, 엽산, 칼슘, 철, 아연 - 상한선(maximum level)이 설정된 영양소: 지방, 포화지방, 비유당 당류(NME Sugars), 소디움 ○ 식품 기준 점심 및 간식 표준 - 과일과 채소의 portion과 이용성 제고, 육류와 지방·기름으로 조리된 전분음식의 제공 횟수, 튀긴 음식·소금과 조미료·스낵·케이크와 비스킷 제한, 과자류 금지(No Confectionery), 생수와 건강음료에 대해 규정

출처: 식약청 공고 제2009-59호 규제영향분석서 재인용, 미국 인디애나주, 영국 SFT 항목 추가

나. 가공품 영양표시제

□ 영국

- 2006년 3월 FSA는 신호등 색상 사용을 포함하는 포장 전면 표시제(FOP labelling, Front-Of-Pack Labelling)를 자발적으로 시행할 것을 업체에 권고
 - 권고대상은 “healthiness”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특히 평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정의된 가공편의식품 카테고리 7개에 초점을 둠
 - 형태가 업체간 통일되지 않았으나 “3가지 색 + 1회분량당 지방, 포화지방, 당류, 소금의 GDA로 구성”한다는 원칙은 동일
 - 2006년 FSA의 권고 이후로 labelling 제도를 도입하는 업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EU

- 2008년 1월 EU 집행위원회는 기존 표시 지침(directive)을 통합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vision of food information to consumers” 발의
- 이 법안에 포장 전면표시제가 포함되어 있음.
 - FOP 표시는 거의 모든 가공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에너지,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류, 염분의 함량이 100ml/100g 또는 1회 섭취량 기준으로 표시됨.
- 다만, 이 법안에 신호등 표시제는 포함되지 않음.
- 이 법안에 대한 유럽의회는 영양정보 표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08.9).
 - 영양정보를 늘리는 방안이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교육과 연계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교육이 매우 중요함.
 - 이미 현재도 많은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유용한 영양정보가 무엇인지 매우 조심스럽게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의 상황을 감안하여 영양표시 대상을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당류, 염분 제외).

□ 호주

- 식품규제상무위원회(Food Regulation Standing Committee)는 09년 2월 FOP 표시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수렴 작업을 시작하였음.
 - 위원회에서 정책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FSANZ에서 식품공전(food code)를 개정하게 됨.
 - 신호등 표시제와 관련해서는 의견수렴을 위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영국의 신호등 표

시제 사례를 3차례 언급하고 있을 뿐, 본격적으로 검토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않고 있음.

- 호주 식품청과협회(Australian Food and Grocery Council)에서는 FOP의 시행이 성공하다는 의견을 개진함.

□ 미국

- 연방 정부 차원에서 FOP는 물론 신호등 표시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
- 산업계 차원에서 Coalition of US food manufacturers and retailers 주관으로 좋은 식품임을 표시하는 Smart Choice ProgramTM을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개별 식품업체의 자율 인증을 통합하여 단일의 심볼 개발
- 표시 내용과 방법
 - ① serving당 칼로리, 포장당 제공 servings 표기
 - ② 19개 제품 카테고리별로 제한되는 영양소와 장려되는 영양소 규정을 충족시키면 체크 표시를 부착
 - ※ 제한되는 영양소: 총 지방, 트랜스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가당, 소디움
 - 장려되는 식품군과 영양소: 과일과 채소, 전곡, 무지방/저지방 유제품, 칼슘, 칼륨, 식이섬유, 마그네슘,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 참조값²⁾ 변경시 유연하게 대처하므로 이용자들은 현재의 기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그러나 이 방안은 포장(package)당 전체 칼로리를 표시하는 FDA의 proposal이나 신호등 시스템을 가로막기 위한 이슈선점(preempt)용으로 설계된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음(예: Dr. Nestle).

2) 2005 US Dietary Guideline, FDA 표준, IOM 보고서 등의 영양 기준, 최근의 합의된 과학적 연구 결과들, Food policy의 변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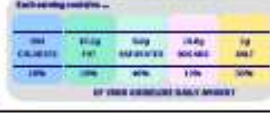
□ 캐나다

- 호주 의회의 보건상임위원회(The House of Commons Standing Committee on Health)에서 2007년 3월 발간한 어린이 비만에 대한 보고서에서 FOP 표시제를 제안함
 - 호주 보건부에서는 전면표시가 암시적인 건강정보표시(implied health claim)라고 판단하고 식품의 건강정보표시제도 개선 차원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음

□ FOP 및 신호등 표시제 소비자 조사

- European Food Information Council(EUFIC)에서는 2008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스웨덴, 헝가리의 소비자 총 11,6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유럽 소비자들은 영양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 당류, 또는 염분에 대해 과도한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음.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들 식품을 덜 먹기보다는(eat less) 회피하려고 하며(try to avoid), 영국에서 이런 현상이 가장 컸음
 - 소비자의 1/3 이하는 쇼핑할 때 영양표시를 찾고 있으며, 영양정보를 찾았을 때 주로 보는 정보는 지방, 열량, 당류, 염분의 영양 표(table)와 GDA 표시임
 - 대부분의 소비자는 정확하게 영양표시로부터 정보를 이해하고 있으며 표시 시스템(신호등 표시제, GDA, colour-coded GDAs)간에 큰 차이는 없었음
 - 6개국의 소비자 모두 더 건강한 제품을 찾아내는데 GDAs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영국의 대다수 소비자는 표시 시스템에 상관없이 더 건강한 제품을 찾아낼 수 있었음. 소비자는 다른 식품보다 더 건강한 식품을 결정하기 위해 지방과 열량 수치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였음.
 - 영양정보와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은 소비자가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는 소비자의 능력을 제고하였으므로 소비자 교육이 꼭 필요함.
- 영국의 BMRB Social Research는 FSA의 신호등 표시제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소비자의 FOP 표시에 대한 이해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았으며(58-71%), 특히 2가지 방법이 높은 선호도(71%, 70%)를 보임. 가장 강한 FOP 표시는 문자(고, 중, 저), 신호등 표시, GDA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였음. 여러 형태의 FOP 표시 형태가 공존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어려움을 유발시키므로 하나의 단일 표시 형태가 FOP 표시제의 이해와 활용을 높일 것임.

Figure 2.3: Label types used in comprehension tests

Label	Example	Label	Example
Eight labels covering all combinations of TL, text and %GDA			
Label 1: TL, text, %GDA		Label 5: Text, %GDA	
Label 2: TL, text		Label 6: Text	
Label 3: TL, %GDA		Label 7: %GDA	
Label 4: TL		Label 8: None	
Additional labels with presentational differences			
Label 9: %GDA, non-signposting colour		Label 10: TL, Circular presentation	

- FOP 표시를 활용하는 구매자들은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나, 구매자들이 구매 결정을 할 때 FOP 표시는 언제나 다른 요인과 경쟁관계에 있음. 어떤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FOP 표시를 이해하지 못하고 덜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적어도 이 집단 중 일부는 이해와 사용도 증대 여지가 있을 수 있음
- 소비자 인지, 이해, 정확한 건강 추론 능력은 그들의 영양 지식, 연령, 사회 계층, 건강한 식이에 대한 관심과 연결됨. 현재 FOP 표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전반적으로 이해 수준이 높다는 점은 FOP 표시의 사용 장애 문제에 대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

다. 광고(마케팅) 제한

□ 영국

- 방송광고에 대한 Ofcom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
 - 어린이 시간대가 아닌 시간에 방송되는 광고를 10세 이하 어린이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평가
 - 허용 여부는 FSA가 만든 nutrient profile을 적용

- 비방송광고는 광고위원회(committee of advertising practice, CAP)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제한적
 - HSFF 식품(high in fat, salt and sugar)과 다른 식품 간에 차별적인 규제를 할 수 없다는 한계

□ 미국

- 식품 마케팅 규제와 광고 규제, 가이드라인 제안
 - 2006년에는 Institute of Medicine of National Academies(IMO)에서 발표한 Food Marketing to Children and Youth: Threat or Opportunity?
 - IMO는 식음료 생산 및 홍보, 마케팅 표준, 부모와 가족, 학교환경, 공공정책, 연구부문에서 10가지 마케팅 표준지침 권고사항을 제시하여 식음료 회사, 학교, 지방정부, 미디어의 역할과 영양표시 및 식품마케팅에 대한 모니터링 권장 방안 제시
- 식품산업 협회 차원 활동
 - 미국음료협회(ABA)에서는 학교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강령을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Alliance for a Healthier Generation에서는 2006년 학교에서 소다음료와 가당음료 판매 자율금지협약 제정

□ 호주 : 제정 실패

라. 음식점 영양표시제

□ 미국

- New York City와 California 주
 - 2008년 7월 현재 New York City의 보건부는 표준 메뉴 항목을 가진 레스토랑에 대해 소비자들이 구매 시점에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칼로리 정보를 메뉴, 메뉴판 등에 게시할 것을 요청함.
 - 2008년 9월 30일에 California는 주 전체의(state-wide) 메뉴 표시제를 입법화한 최초의 주가 됨.
 - 주 내에서 20개 이상의 위치한 식당에 칼로리와 탄수화물, 포화지방, 소다움의 영양정보를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브로셔와 같이 분명히 눈에 띄는 방법으로 나타낼 것을 요청함.
 - 2009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며, 2011년 1월 1일 이후에는 표준 메뉴 또는 메뉴판 위, 진열대의 식품에 직접 표시

○ Philadelphia 주

- Philadelphia주는 현재까지 가장 강력한 menu labeling laws를 통과시켰음 (2008.11.6).
- 2010년 1월 1일부터 15개 이상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식당은 메뉴판과 메뉴에 칼로리를 게시해야 함.
- 칼로리 뿐 아니라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소듐, 탄수화물 함량에 대한 정보도 함께 게시해야 함.

○ LEAN (Labeling Education and Nutrition) act of 2009

- LEAN Act가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발의되어 현재 Committee on Health, Education, Labor, and Pensions에 계류 중임
- 20개 이상의 위치에서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가지고 있는(체인) 식당과 식료품점은 소비자가 그들의 식사를 주문하기 전에 각 메뉴 항목의 칼로리 정보를 볼 수 있게 칼로리를 표시하도록 함. 칼로리는 메뉴, 메뉴판, 혹은 승인된 대체 방법(메뉴에 추가 혹은 메뉴판 옆에 표지와 같은)으로 직접 게시하게 될 것임.
- 그러나 이 법안은 실제로 칼로리가 메뉴나 메뉴판에 게시될 것을 실제 요구하지 않으므로, Philadelphia주, New York City, California의 더 엄격한 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식품업계에서 LEAN act를 지지한다는 의견도 있음.

□ 영국

- FSA는 패스트푸드와 다른 체인 식당에서 2009년 6월까지 주문시점(point of choice)에 알아볼 수 있는 칼로리 표시(calories labelling) 시행을 업계에 권장하고 있음
- 패스트푸드점, 레저시설, 병원, 직원 식당 등의 18개 업체가 2009년 4월말부터 메뉴판에 칼로리 정보를 표시하기로 함

마. 어린이 보호구역

□ WHO 등에서 fast food free zone 또는 healthy food zone 설정 제안

- Janet Currie 등은 학교 근처의 패스트푸드 식당 근접에 따른 비만률을 조사분석함.
- 9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패스트푸드 식당이 학교와 0.1마일·내에 있으면 비만율이 5.2%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

표 3-2. 패스트푸드를 규제하는 zoning 정책 제안 사례

저자	내용	자료원
WHO (2008)	·학교 근처의 식품이용성과 관련한 정책 실행을 위한 제안 ·행동을 위한 기회를 정의하고 그들의 노력의지(commitment)를 촉진시키기 위해 학교 정책 개발 과정에 식음료 생산자 대표에게 자문하라. ·학교 근처에서 운영하는 모든 식음료 생산자, 공급자, 유통업자(distributors)에게 학교 식품 영양 표준을 보급하라. ·어떤 음식과 음료가 학교 근처에서 판매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메커니즘 개발을 고려하라.	School Policy framework Implementation of the WHO Global Strategy on Diet,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영국 School Food Trust (2008, 3)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stay on site policy'의 채택 타당성 조사하여 학생들이 정크푸드로 점심을 먹는 것을 방지 ·local authorities가 학교 근처에 정크푸드점에 대한 면허증의 수를 제한할 것을 요청, Healthy Weight, Healthy Lives: A cross Government Strategy for England을 토대로 local authorities가 학교 근처에 정크푸드점이 제한되는 'healthy food zone' 신설 고려를 요청	"New research reveals the scale of junk food temptation"
Currie et al. (2009) NBER Working Paper	·9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패스트푸드 식당이 학교와 0.1마일내에 있으면 비만율이 5.2% 증가 ·학교 근처의 패스트푸드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정책이 학령기 아동들의 비만에 증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The Effect of Fast Food Restaurants on Obesity

□ 미국과 영국의 일부 지방정부에서 패스트푸드점 인허가 제한

- 건강·식품환경과 관련된 구역 지정 사례는 New York City (2006년)가 처음, LA City (2008년)가 두 번째임
- 영국 Leicester City Council는 학교 주위에서 버거와 아이스크림 mobile van을 금지하는 계획을 검토 중임

표 3-1. 패스트푸드 제한을 위한 Zoning ordinance 사례

항목	내용 및 목적	국가, 지방정부
패스트푸드점/Drive Through Service 개업 금지	·쓰레기, 도로 혼잡 경감과 지역사회의 풍취를 보존하고 고양시키기 위해 패스트푸드점과 Drive Through Service 금지	미국 Massachusetts, Concord(1981) 미국 California, Carlsbad, 미국 Rhode Island, Newport
지역 제한	·지역의 독창적인 특징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formula restaurants의 확장이나 신설을 금지	미국 California, Solvang(Danish) 미국 California, Davis 미국 Washington, Bainbridge Island
개수 제한(Quotas)	·주변상권과 근린지역의 성격을 보호하기 위해 quota 실행	미국 California, Berkeley
밀도 규제	·public streets나 상업지구에서의 패스트푸드점 간의 거리나 수를 조정	미국 California, LA Westwood Village 미국 Washington, Bainbridge Island 미국 New Hampshire, Town of Warner
거리 제한	·패스트푸드점 뿐 아니라 다른 식당들도 학교, 교회, 병원, nursing homes과 최소 500피트 거리 두기	미국 Michigan, Detroit
거리 제한	·학교와 400피트내 접근 제한	미국 Minnesota, Arden Hills
개수 제한	·비만 억제를 위해 빈곤지역의 패스트푸드점의 개수를 제한	미국 New York City (2006,9)
개업 유예	·최빈곤주거지역에 새로운 패스트푸드 개점을 1년간 일시 유예하여 빈곤지역의 식품사막 문제를 해소	미국 LA City(2008,8)
거리 제한 신규 업소 규제	·학교, 공원, 레저 시설 400m이내의 모든 새로운 패스트푸드 개점을 금지하고 주거지역과 시내 번화가에 패스트푸드점의 개수를 제한	영국 Waltham Forest (2009.3)

자료: Julie Samia Mair et al., THE CITY PLANNER'S GUIDE TO THE OBESITY EPIDEMIC: ZONING AND FAST FOOD(October 2005),

미국 New York City: <http://www.nytimes.com/2006/09/24/nyregion/24fast.html?pagewanted>

미국 LA City: <http://americancity.org/daily/entry/984/>

영국 Waltham Forest : <http://www.walthamforest.gov.uk/>

3. 시사점

☐ 선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시행되는 분야는 학교 내 관리

- 광고(마케팅) 제한, 가공품의 전면 영양표시제, 음식점 영양표시제는 일부 국가 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 중이거나 논의 중
- 신호등 표시제는 영국(자율 실시) 이외에는 논의 수준
- 건강친화기업, 품질인증제 등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확인 되지 않음
 - 영국의 “Healthier Food Mark”는 공공서비스의 식당 대상 표시제

☐ 우리도 선진국에서 논의 중인 제도에 중점을 둘 필요

- 선진국에서 검토하지 않는 제도는 대부분 실효성 논란이 큰 경향

<국가별 동향 : 요약>

☐ 학교 내 관리는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시행 중

-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학교 내 급식 및 구내매점, 자판기 등에 대한 규제를 시행 중
- 국가별 추진 방식이나 정도는 차이가 있으나 학교내부의 일이라 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는 듯
 - 미국의 일부 주정부는 금지를 법제화, 영국은 내부 지침 형식으로 추진

☐ 어린이 대상 광고(마케팅) 제한은 현재 법제화 여부를 놓고 논의 활발

- 영국은 기존의 자율적 규제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입법 추진 중
 - 학교 내 규제는 교육부 내부 지침을 통해 실시
- 호주는 1차례 상원에서 입법에 거부됨

☐ 가공품의 전면 영양표시제는 일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논의 활발

- 영국은 FSA가 업체 자율을 권장하고 있음
- EU와 호주에서는 논의 중
 - 유럽의회나 호주 협회 등의 반응을 감안할 때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듯

☐ 음식점 영양표시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 활발

-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법제화 하여 시행 중

☐ 어린이 보호구역은 인허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영국의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

제1 주제 :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련 주요 선진국의 정책동향

제2주제: 어린이 식생활 안전의 주요
과제와 종합계획 구상 방향

김 혜 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주제: 어린이 식생활 안전의 주요 과제와 종합계획 구상 방향

1.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환경의 변화

1. 어린이 식품섭취 및 식생활 변화

가. 우리나라 식품소비 패턴의 변화

- 식품 소비지출 트렌드 변화
- 외식비 지출의 급속한 증가
- 기호식품, 건강 지향 식품 소비 증가
- 해외 의존도 증대

나. 어린이 식습관 중요성 및 식품소비 변화

- 어린이의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은 매우 중요
- 어린이들의 패스트푸드 및 탄산음료 섭취 증가

다. 식사환경 변화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의 변화

- 외식의 증가
 - 외식의 경우 집에서 만드는 음식보다 지방함량이 높음
 - 고열량, 고지방, 고나트륨 식사를 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 외식 및 패스트푸드 등 전체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되면서 영양불균형 우려
- 우리나라 가공식품 및 외식의 증가 추세
 - 저출산과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의 원인으로 가공식품의 소비와 외식 급증, 이에 따른 가공식품 및 외식의 지출비는 지속적으로 증가
 - 외식산업 시장의 급격한 성장
 - 어린이들의 외식 비중 증가 추세

라. 학교 주변 어린이 식생활 위해 환경 존속

- 어린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학교주변 환경 개선 필요성 증대
- 학교 주변의 어린이 식품안전 및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어린이 건강보호 조치 필요
 - － 식품 선호도는 어린이 시절에 형성되기 때문에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훗날 이들의 성인기의 식습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어린이들은 보편적으로 학교에 재학하므로 학교기반의 중재가 접근성이 높음
 - － 학교 및 학교주변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마. 어린이 식품소비 추이 분석

- 연령별 어린이 식품소비 추이 분석
 - － 통계청 ‘가계조사’의 식품비 지출관련 횡단면자료를 이용하여 어린이의 식품류별·품목별 식품 소비추이를 산출함 (통계청의 1985~2007년간 가계조사 원자료 이용)
 - － 쌀 소비: 어린이는 20대 이상 연령계층과 비교할 때 쌀 소비가 가장 빠르게 감소 반면, 빵과 과자류는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하고 대부분 연령층에서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 어린이의 육류 소비는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2000년대 들어서도 정체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 다른 연령층과의 소비격차가 크게 감소함. 육류 품목별로 청소년 소비추이를 살펴보면, 어린이의 쇠고기 소비는 대체로 정체추세인 반면, 돼지고기와 닭고기 소비는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돼지고기는 20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연령계층에서 소비가 빠르게 증가한 품목임.
 - － 어린이의 과일 소비는 2000년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임. 어린이의 과일 소비는 20대 이상 연령층과 비교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바. 청소년의 식품소비 인식

- 청소년의 식생활 양상
 - － 한·중·일 12~17세 청소년의 식품소비 비교분석한 결과 아침식사를 매일 하는 청소년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여, 일본과 중국에 비해 결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됨.

- 주중 저녁식사 장소에 대한 조사결과 일본 청소년은 대부분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는 반면 한국 청소년은 주중에 친구와 또는 혼자 외식을 하는 경우가 높음.
- 저녁식사 시간 불규칙: 저소득계층, 어머니가 맞벌이를 할 경우 불규칙 비중이 높음. 한국에서 저녁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이유는 식사준비가 안 되어서, 학원에 가야해서 등으로 한국 청소년은 바쁜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식사시간을 놓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청소년들이 외식하는 장소는 식당, 편의점, 길거리 트럭·포장마차임. 편의점이나 길에서 저녁을 먹는 비중이 높아 저녁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충 때우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2. 어린이 영양섭취 불균형과 비만의 지속적 증가

가. 어린이의 영양소 섭취 현황

- 어린이와 청소년의 영양소 섭취 현황
 - 어린이의 에너지 섭취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 미만을 섭취한 대상자 비율이 높음
 - 특히 성장 및 골격발달에 영향을 주는 칼슘, 철,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섭취가 영양섭취기준 미만 비율이 높음
 - 반면 나트륨의 섭취량을 상한치를 크게 초과하는 양상을 보임
 - 어린이의 가당제품 및 탄산음료, 패스트푸드의 섭취량 증가 추세
 - 13~19세 그룹이 타 그룹에 비해 가당제품의 섭취가 많으며 비만도에 따라 주요 가당제품의 섭취횟수가 과체중군에서 높은 경향을 보임
 - 탄산음료의 경우 2005년과 2006년 각각 77.6%, 75.9%, 패스트푸드의 경우 각각 70.3%, 68.4%의 청소년이 주 1회 이상 섭취
- ※ 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심층분석연구, 2006.

나. 어린이 건강 결정 요인 및 환경조성

- 다양한 건강 결정요인의 변화에 의하여 어린이 비만 증가

- 어린이의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균형이 건강에 영향을 미침
- 어린이 건강을 위한 바른 환경 조성 and 어린이 식습관 변화 필요
- 어린이의 비만을 지속적 증가

3. 어린이 식품 소비 전망 and 어린이 식품정책의 과제

가. 식품별 소비 전망

- 통계청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어린이 연령계층별 식품소비 추정치를 이용하여 식품소비 전망.
 - － 어린이의 2020년까지 가정 내 식품수요를 전망한 결과 쌀, 쇠고기, 어패류, 채소류, 과일류 소비는 감소
 - － 돼지고기, 빵과 과자류, 음료류, 외식소비의 증가가 전망됨.
 - － 채소, 과일, 어패류의 경우 완만한 감소추세가 지속
 - － 곡류의 감소추세는 다소 완화, 또한 빵과 과자류, 음료류의 소폭증가가 예상
 - － 외식 증가추세도 이전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나. 영양 섭취 및 식생활 전망

- 외식 소비 증가로 지방 과잉 현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반면 어패류와 채소류 등의 소비 감소는 칼슘, 철, 칼륨, 비타민 C 등 영양소 부족을 가져올 가능성이 큼.
- 산업화와 서구화가 진행되고, 사회·경제·인구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전통 식문화가 붕괴되고, 잘못된 식습관이 확대됨.
-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지 않을 경우 불규칙적인 식생활과 서구식 식생활 확대로 영양불균형이 확대되고 생활습관병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어린이들이 저급 급식, 아침결식, 불규칙한 저녁식사,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에 노출될 경우 미래 미래세대의 건강을 저해하는 심각한 상황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

II.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방향(안)

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도입 배경

1-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의 의의

- 본 종합계획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담은 종합계획임
- 본 종합계획은 범국가적 어린이 식품안전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

1-2. 2007년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 수립

- '03.6월부터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수립·추진
- 국무총리실 주관 이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부정·불량식품의 안전관리 추진
- '06. 5. 10 「어린이 먹거리 안전종합계획」 발표
- '06. 6. 「어린이 먹거리 안전의 해」 종합계획 마련 추진
- '07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어린이 먹거리 사업단」 발족

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제도적 기반 구축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10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 로드맵의 일환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 패스트푸드, 불량식품, 비위생식품 등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던 어린이의 식생활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한 최초의 법안
- 현행 법체계에는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있으나 어린이 식품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한계가 있음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시급성 제기

-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특별법 발의
시행 2009. 3. 22 법률 제8943호 (2008. 3. 21제정)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2009. 3. 20 제정)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고시 마련
'09. 5. 8 고열량 저영양 식품기준 등 4개 고시 (식약청 고시 제25~28호)
 - 어린이 고열량 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식약청 고시 제25호)
 -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 (식약청 고시 제26호)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식약청 고시 제27호)
 -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항목 및 방법 등 (식약청 고시 제28호)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안)은 향후 3년간(2010~2012년) 시행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의 청사진을 제시함.
 - 세부 실천계획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6조)에 근거하여 매년 시·도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통하여 구체화됨.
- 어린이 식생활 안전 종합계획은 다음 4가지 전략목표를 통하여 「안전하고 균형잡힌 어린이 식생활 보장」 실현에 기여함.
 -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
 - 어린이의 올바른 식품선택 보장
 - 어린이의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기반 강화와 모니터링

3 기본 시각과 추진방향(안)

□ 기본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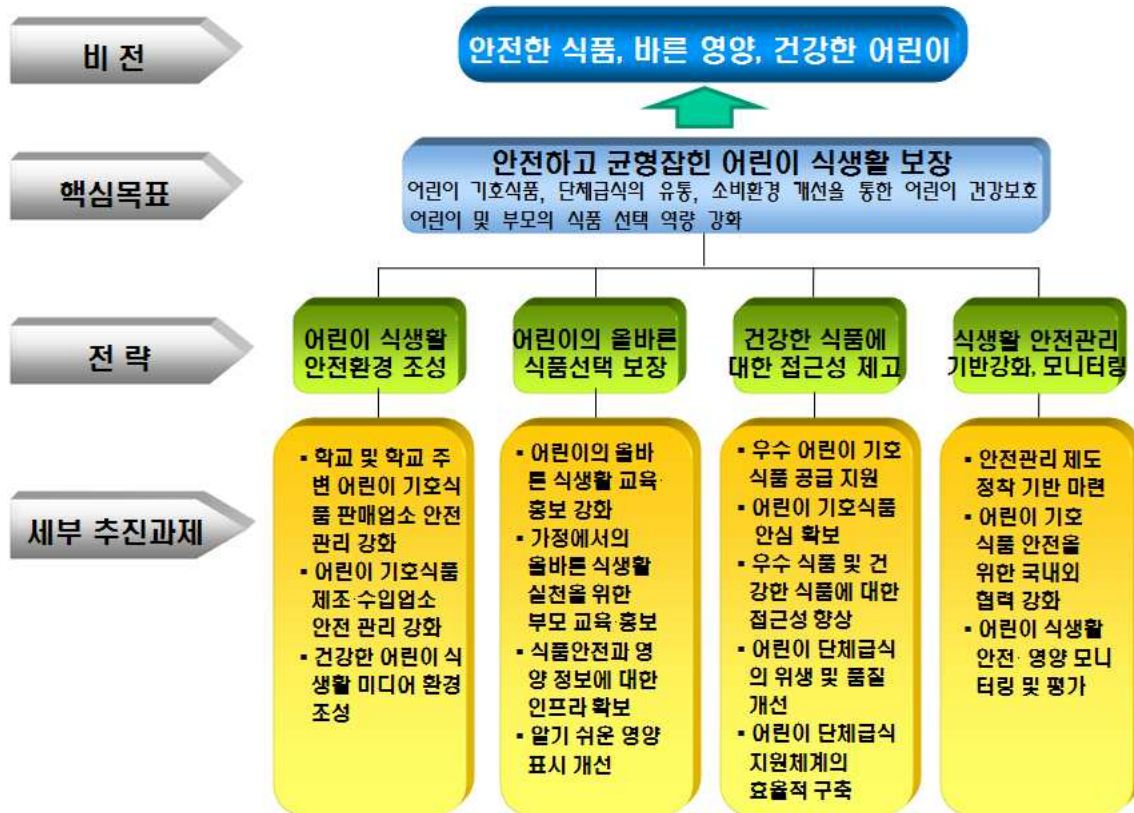
- 2007~2010년 어린이 먹거리 종합대책과의 일관성 확보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령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 지원
- 기존 어린이 먹거리종합대책을 발전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 전략 과제 추가
- 지속가능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제도의 보완
- 관련 부처, 기관, 지자체, 식품산업체와의 파트너쉽 구축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정책 및 사업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
-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 및 R&D 강화
- 식중독의 예방과 어린이 식품위생의 개선
- 어린이 영양불균형 개선(과체중/비만 및 저체중 감소)과 식이에 기인한 만성 질환 사전 예방
- 관련 국가 계획과의 연계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 추진 방향 (안):

- 어린이 식생활안전 제도적, 환경적 기반 강화
-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 및 영양의 안전성 확보
- 어린이와 부모의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역량 강화
- 신뢰성있는 정보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홍보의 전달 강화
- 관련 부문 인력의 교육·훈련 지원
- 식품업계와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을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식품공급 확보
- 관련 부처, 지자체, 관련기관, 식품산업체와의 협력체계 강화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제도의 정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보완
- 어린이 식품안전 모니터링 및 조사·연구 강화를 통한 과학적 증거 기반의 확보

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개념도 (안)



□ 전략목표와 세부과제 선정 기준

- 2007~2010년 어린이 먹거리 종합대책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령의 지속적 효과적 시행 지원
- 사업의 사회적 관심도, 사업의 중요도, 우선순위, 다른 정책에 대한 파급효과 고려
- 전략 목표와 세부과제 선정에서 종합성, 포괄성, 균형성, 지속가능성 및 시행가능성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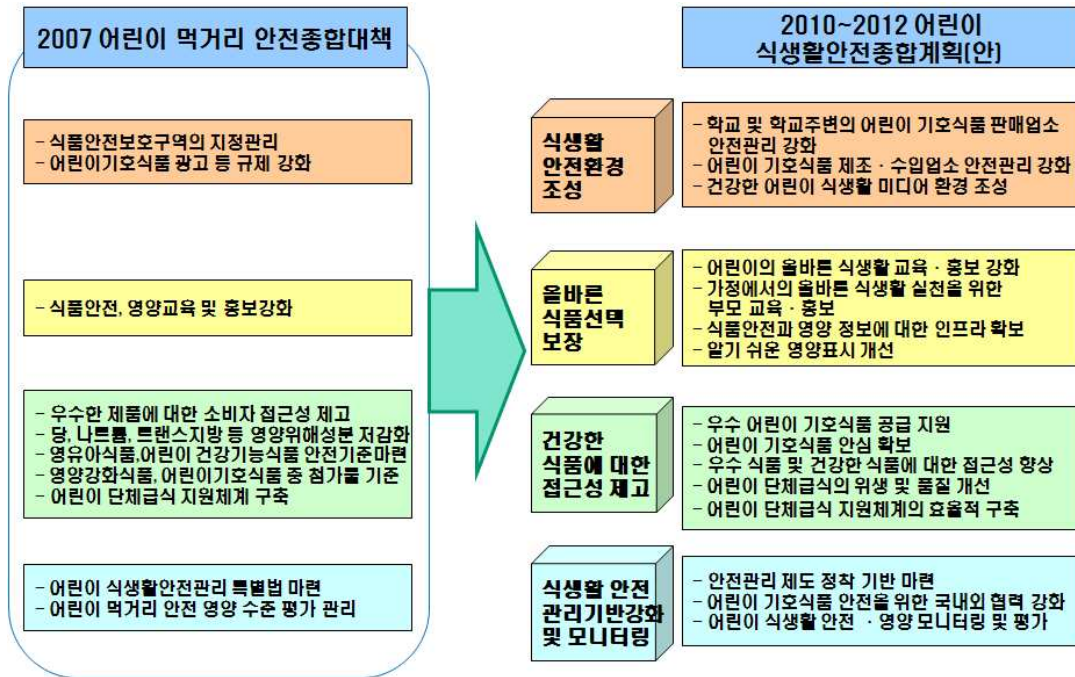
5

추진목표와 세부 추진과제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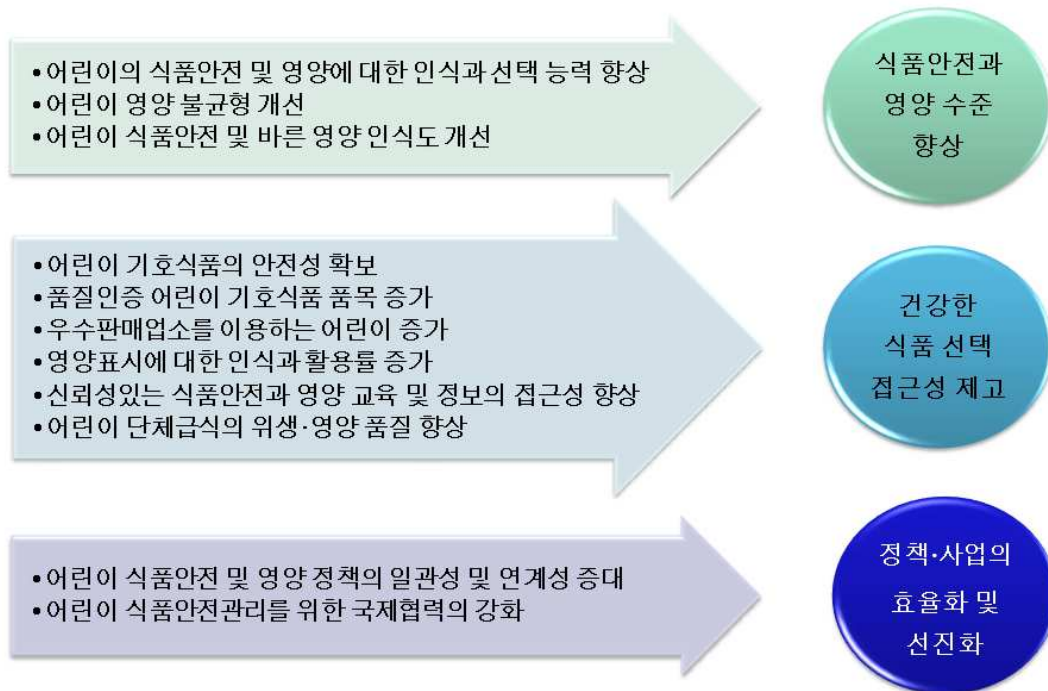
추진 목표	추진 전략	세부 추진과제
1.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	1.1. 학교 및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안전관리 강화	•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강화
		• 학교 및 학교 주변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우수판매업소 지정·확대 및 위생취약 업소 지원
		•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모니터링
	1.2.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수입업소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수준 향상 • 저품질 수입식품 관리 강화
	1.3.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미디어 환경 조성	• 방송 및 비방송 광고 식품업계 자율규제 도입
2. 어린이의 올바른 식품선택 보장	2.1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교육·홍보 강화	•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 교육·홍보 전달 강화와 실천 기술 증진
		• 학교 교육을 통한 어린이 식생활 향상 교육 강화
		• 미디어, 소비자단체, 산업, 지역사회 부문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 교육 역할 강화
		• 관련 인력(교사, 보건소 인력 등) 교육 훈련
	2.2 가정에서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부모 교육과 정보 제공	• 가정에서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부모 교육과 정보 제공 기회의 확대 • 학부모회 및 민간 사회단체와 연대한 학부모 식생활 캠페인 전개
	2.3 신뢰성 있는 식품안전과 영양 정보에 대한 인프라 확보	• 신뢰성 있는 식품안전 및 영양 정보 접근도 향상 • 어린이 식생활지침 개정 보급
	2.4 알기 쉬운 영양표시 개선	• 알기 쉬운 영양표시제의 자율시행과 단계적 도입
		• 외식업체 영양성분 표시 확대
		• 영양표시 모니터링 강화
3. 어린이의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3.1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 공급 지원	• 우수 제품 생산·판매 지원
	3.2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확보	• 당, 나트륨 등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
		• 어린이 기호식품 기준 규격 강화
	3.3 우수 식품 및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어린이의 우수 식품 및 건강한 식품의 접근성 향상
		• 식품산업체의 우수 식품 생산 기반 강화

추진 목표	추진 전략	세부 추진과제
	3.4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품질 개선	• 어린이 단체급식의 영양기준 개발 및 확산
		•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정성 확보
		• 단체급식의 당, 나트륨 등 영양위해 성분 저감화
		• 취약계층 및 결식아동 급식의 위생 및 영양 품질 개선
	3.5. 어린이 단체급식 지원체계의 효율적 구축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립 및 효율적 관리운영 체계 도입
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기반 강화 및 모니터링	4.1 안전관리 제도 정착 기반 마련	• 법령 시행 정착 및 제도 보완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정책 수행 지원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분야 재정 및 인력 기반 확충
	4.2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 어린이 식품 관리 관련 정부 부문의 협력 강화
		• 식품산업계와 파트너십 강화와 책임 공유
		• 소비자 단체와 파트너십 강화
		• 국제협력 강화
	4.3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 모니터링 및 평가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지수 개발·적용
		•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 연구 강화

■ 2007년 어린이 먹거리 종합계획과 어린이 식생활종합계획안(2010~2012) 비교



■ 종합계획과 어린이 식생활종합계획안(2010~2012)을 통한 기대효과



■ 2007년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과 비교한 본 종합계획의 차별성

○ 식생활 등 사회 및 환경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향후 3년간의 종합계획 수립방향은 향후 어린이 식품 환경의 변화, 우리나라의 문제점, 제외국의 동향 및 저출산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

○ 건강한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의 강화

식품산업계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전하고 건강지향의 지속가능한 식품공급 보장을 위한 식품업계 지원과 협력 강조

○ 제도기반의 도입기 ⇒ 제도의 정착 및 보완 발전기

어린이 식생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정착 발전시켜 나가도록 함.

○ 식품 선택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의 효과적 전달

- 기존의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나아가 소비자(어린이, 부모) 스스로가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춤.
- 학교 기반의 식생활교육과 함께 소비자단체와 언론 및 식품산업체의 참여를 통한 식생활 안전 및 영양교육 확대 유도
- 소비자(어린이, 부모)가 올바른 영양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알기 쉬운 영양표시 개선, 신뢰성있는 식품안전과 영양정보 인프라 확보, 관련 인력 역량 개발 등

○ 어린이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가정에 까지 사업 대상 영역 확대

○ 식품안전과 영양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 기반 마련의 강조

○ 어린이 식생활안전 정책 및 사업의 진척도, 효과성 평가와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등 기반 강화

6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추진 방향 [안]

추진 목표	추진 전략	세부 추진 과제	세부 사업	핵심 사업
1.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	1.1. 학교 및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안전관리 강화	•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강화	•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방법의 제도적 보완: 지역특성별 세분화 • 길거리 판매업소 관리 (향후) • 학원 밀집지역의 식품안전 관리 (향후)	◎
		• 학교 및 학교 주변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학교 및 학부모, 전담관리원, 지자체, 지방청, 소비자단체 등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 •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강화 -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의 보관상태 불량, 유통기간 경과, 비위생적 환경에서 조리 판매 어린이 다소비/기호식품의 위해 모니터링 - 학교 주변 신학기 집중 관리 • 전담관리원 육성 및 역량 강화 • 학교 주변 길거리 판매업소 및 학원가 주변 모니터링 (향후)	◎
		• 우수판매업소 지정·확대 및 위생 취약업소 지원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및 확대 •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 점검 및 취약업소 시설개선 지원 등	◎
		•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모니터링	•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비중 감소 • 고열량·저영양 식품 모니터링 강화 • 판매자의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인식 제고 방안 마련 등	
	1.2.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수입업소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수준 향상	• 제조업소 지도·점검 강화, 정기적 모니터링 •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HACCP 지정 확대	◎
		• 저품질 수입식품 관리 강화	• 위생취약국 현지 수입업소 관리 강화 • 저품질 수입식품 유통업체 관리 시스템 구축 등	
	1.3.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미디어 환경 조성	• 방송 및 비방송 광고 식품업계 자율규제 도입	• 고열량·저영양 식품, 미끼상품 TV광고 제한 (캐릭터 상품 광고 제한) • 식품업계 자율규제 방안 마련 확대 • 비방송 고열량·저영양 식품광고 자율규제 권장 • 어린이 식품 광고 모니터링 강화	
	2.1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교육·홍보	•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 교육·홍보 전달 강화와 실천기술 증진	• 캠페인 및 우수 실천사례 발굴 • 어린이 영양상담 서비스 운영 및 지원 • 취약계층 아동 식생활 교육 및 관리	◎

추진 목표	추진 전략	세부 추진 과제	세부 사업	핵심 사업
2. 어린이의 올바른 식품선택 보장	강화		프로그램 개발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아동 등) • 교육·홍보에 대한 접근도 모니터링과 결과 피드백	
		• 학교 교육을 통한 어린이 식생활 교육 지원 강화	• 식품안전 및 영양 관련 교과 내용 개선 지원 • 학교 영양교사, 영양사의 영양교육 역할 강화	
		• 미디어, 소비자단체, 산업, 지역사회 부문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 교육 역할 강화	• 미디어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 교육 역할 강화 • 소비자단체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 교육 역할 강화(소비자 감시활동과 병행하여 추진) • 식품산업체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 교육 역할 강화 • 지역사회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교육 역할 강화 (방과후 학교, 복지기관, 보건기관 등과 연계하여 추진)	
		• 관련 인력 (교사, 보건소 인력 등) 교육 훈련	• 교육 현장과 협조 network 구축 • 교사(일반교사, 영양교사 등) 교육 훈련 지원 • 지자체 식품위생 및 보건소 인력 교육 훈련 및 역량 강화	
	2.2 가정에서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부모 교육과 정보 제공	• 부모 교육 및 정보 접근기회의 확대	• 부모 교육과 홍보 전달 개선 • 미디어를 통한 부모 교육 정보 제공 확대 • 가정에서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부모 교육·홍보 기회의 확대 • 학부모회 및 민간 사회단체와 연대한 학부모 식생활 캠페인 전개	◎
	2.3 식품안전과 영양 정보에 대한 인프라 확보	• 신뢰성 있는 식품안전 및 영양 정보 접근도 향상	• 식품영양 교육·홍보 자료와 정보의 개발 보급을 효율화하고 종합하기 위한 지원 기구의 설립 (식품영양정보원 설립) • 신뢰성, 일관성있는 식품안전 및 영양교육 매체 개발 보급 •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 교육·홍보 콘텐츠 DB 구축 및 웹기반 활용시스템 개발 운영 • 교육홍보 매체 효과성 및 접근성 평가	◎
		• 어린이 식생활지침 개정 보급	• 어린이 식생활지침 개정 보급 (보건복지가족부)	
	2.4 알기 쉬운 영양표시	• 알기 쉬운 영양표시제의	• 알기쉬운 영양표시제(예: 신호등 등 표시제) 자율 시행 확대	

추진 목표	추진 전략	세부 추진 과제	세부 사업	핵심 사업
	개선	자율시행과 단계적 도입	• 어린이의 영양표시 이용에 관한 소비자 연구 • 알기 쉬운 영양표시 도입을 위한 산업체 지원 • 알기 쉬운 영양표시제의 영향(소비자/산업체) 연구	
		• 외식업체 영양성분 표시 확대	• 대형 패스트푸드업체 영양표시 자율 확대 • 영양성분 자율 표시 시범 음식점의 확대	
		• 영양표시 모니터링 강화	• 영양표시 모니터링 • 영양표시 인식도, 소비자 교육·홍보에 대한 이용도 평가	
3. 어린이의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3.1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 공급 지원	• 우수 제품 생산·판매 지원	•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확대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확대	◎
	3.2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확보	• 당, 나트륨 등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	• 당, 나트륨 등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 기술 R&D 지원 • 당,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중소기업 교육홍보 및 지원 •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
		• 어린이 기호식품 기준 규격 강화	• 어린이 기호식품 첨가물 등 위해물질 사용 규제 강화 • 어린이 기호식품의 식품첨가물 섭취량 평가	◎
	3.3 우수 식품 및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어린이의 우수 식품 및 건강한 식품의 접근성 향상	• 학교 매점의 우수판매업소 지정 추진 • 학교 내 탄산음료 자판기 판매 제한 (교육인적자원부) • 보육시설과 학교의 품질인증 제품 및 건강한 식품공급 확대	
		• 식품산업체의 우수 식품 생산 기반 강화	• 식품산업체의 건강한 식품 생산 자율 참여 확대 • 식품산업체의 건강한 식품 생산의 점진적 확대 • 건강한 식품 생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3.4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품질 개선	•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성 확보	•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및 식품 공급 • 어린이 단체급식 식중독 예방 관리 •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및 신속검사, 원인규명체계 구축 • 취약시설 집중 지도 점검 • 어린이 단체급식시설의 HACCP 지정 확대	◎
		• 단체급식의 당, 나트륨 등 영양위해 성분 저감화	• 당, 나트륨 저감화 조리 기술 및 지원 등	

추진 목표	추진 전략	세부 추진 과제	세부 사업	핵심 사업
		취약계층 및 결식아동 급식의 위생 및 영양 품질 개선	아동복지사업 및 지역 보건사업 등과 연계 등	
	3.5. 어린이 단체급식 지원체계의 효율적 구축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설립 및 효율적 관리운영 체계 도입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 재정·인력 기반 확보, 기술 지원 - 어린이 단체급식 지원 네트워크의 구축 및 효율적 운영체계 도입 -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비용편익 분석 등	
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기반 강화 및 모니터링	4.1 안전관리 제도 정착 기반 마련	법령 시행 정착 및 제도 보완	- 개정이 필요한 법령의 내용 발굴 및 개정 추진 - 지자체 시행 지침 및 지방조례 제정 촉진 -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모니터링 등 - 관련 정책과 사업의 규제 영향 평가 내실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정책 수행 지원	지자체, 업계 등 대상별 제도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교육·홍보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분야 재정 및 인력 기반 확충	- 지자체 조직 및 인력의 확보 - 지자체 담당 인력의 역량 강화	◎
	4.2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어린이 식품 관리 관련 정부 부문의 협력 강화	- 부처간 어린이 식품 관리 협조체계 구축 - 중앙·지방 정부간 어린이 식품 관리 협력 강화(지자체 보고체계의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등)	◎
		식품산업계와 파트너십 강화와 책임 공유	식품산업계와 파트너십 구축 및 지원체계 구축	◎
		소비자단체와 파트너십 강화	소비자단체, 시민사회와 파트너십 강화	
		국제협력 강화	- 국제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 강화 - 어린이 기호식품 CODEX 의제화 추진 - 국제기준(WTO, SPS 협정, TBT 협정)과의 조화 추구 및 과학적 근거의 지속적 확보를 위한 연구 강화 - 중앙정부에서 민간 및 지자체의 주도적 사업 수행으로 전환하고 민간과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 국내외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체계를 통한 대응 - 국제학술대회 및 심포지움 개최	
	4.3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 모니터링 및 평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지수 개발·적용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지수 개발·적용 및 보완 - 포괄적인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관리 성과 지표의 개발, 2012까지 주요 사업의 진척도와	◎

추진 목표	추진 전략	세부 추진 과제	세부 사업	핵심 사업
			수행정도 모니터링	
		•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 연구 강화	•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모니터링 •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조사 연구 • 영양성분 DB의 확충(지방산 조성, 콜레스테롤 등 포함) • 어린이 식품소비 및 태도 조사 • 어린이 식생활 정책의 영향평가 등	◎

III. 영역별 정책 과제와 추진방향(안)

1.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

1-1

학교 및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안전관리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 ☐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위생 수준 불량
 -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수입, 소분, 판매업소는 비위생적 취급, 유통기한 허위표시, 자가품질검사 위반 등 문제(식품의약품안전청, 2009).
 - 어린이 식품판매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기호식품에서 식중독균, 충호기성균, 대장균군, 진균이 검출되고, 오염 수준이 높음(박신영 등, 2006).
 - 서울시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50곳을 조사한 결과, 제품의 비위생적 취급, 유통기한 및 성분 표시 불충분 및 제품에서의 미생물 검출 등의 문제(녹색소비자연대, 2008).
- ☐ 어린이 기만 제품의 판매
 - 어린이들은 스티커나 장난감 등의 경품을 가지기 위해 식품을 사는 경우가 많음.
 - 일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처에서 학용품 유사제품 등 어린이 기만형 제품을 판매하거나, 경품이나 사은품의 명목으로 ‘끼워팔기’ 식품 제공하는 경우 있음.
- ☐ 어린이·청소년의 간식 구매 장소
 - 초등학생은 학교 주변에서 간식을 사먹는 경우가 88.0%임(임경애, 2006).
 - 중학생은 학교 밖 가게, 편의점, 학교 내 매점, 고등학생은 학교 내 매점과 학교 밖 가게의 이용 비율 높음(서울특별시청, 2008).
- ☐ 식품안전보호구역 도입
 - 어린이가 간식을 자주 구매하는 학교 주변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 및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 실시.
 - 2009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

□ 식품안전보호구역 설정 범위 논란

-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상인 및 성인 소비자의 정상적인 상업·소비활동 침해 우려(정기혜, 2007).
- 식품안전보호구역 외 판매업소에서의 소비로 인한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고열량·저영양 식품 소비 감소의 효과 저하 우려(강재현 2009; 박태균, 2009).
- 우수판매업소 지정 기피 우려: 매출 감소와 규정 위반 시 과태료 규정 등으로 인해 판매업소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는 것을 기피할 우려가 있음.

□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범위 설정 논란

- 식품산업계에서는 주요 수출 식품인 과자류와 면류 등이 고열량·저영양 제품으로 규정되어 국내에서 판매가 제한된다면 수출시 국제경쟁력이 저하될 우려 제기

2. 정책 추진방향

□ 식품안전보호구역의 관리 강화

-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방법의 제도적 보완: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유연적인 범위 설정(정기혜, 2007)을 통한 식품안전보호구역 제도의 보완
- 길거리 판매업소의 관리 (향후)
- 학원 밀집지역의 식품안전 관리 (향후)

□ 학교 및 학교 주변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학교 및 학부모, 전담관리원(식품위생감시원 등), 지자체,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청 등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학교 주변 위해식품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강화: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보관 유통기한, 위생 조리환경 지도·점검. 분기별 또는 신학기 집중관리를 통한 식품안전 수준 향상 도모
- 전담관리원의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 학교 주변 길거리 판매업소 및 학원가 주변 모니터링 (향후)

□ 우수판매업소 지정·확대 및 위생 취약업소 지원

-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확대해 나감.

※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Eat Smart' Program은 주정부에서 정한 표준에 맞는 건강한 식품 선택을 제공하는 카페테리아와 레스토랑을 우수업소로 인정하는

자발적인 프로그램 운영

※ 영국 FSA에서는 2009년부터 'Healthy Food Code' Mark를 영양가 높은 식품을 제공하고 더 건강한 식이를 장려하는 공공부문 식당이나 catering 업체에게 부여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중

- 저장고 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을 위한 설비 지원
- 문구점 등의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특별 관리
- 판매업자 대상 식품의 위생적 취급에 대한 교육

□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모니터링

-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유통·판매 모니터링, 판매 비중 감소
- 언론홍보, 학교 교육을 통하여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홍보
- 판매업자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 홍보 및 교육

○ 연차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세부사업	시행기간					추진 주체 및 참여기관
	~2009	2010	2011	2012	2013~	
•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강화 -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방법의 제도적 보완: 지역 특성별 세분화 - 길거리 판매업소 지도·점검 강화(향후) - 학원 밀집지역의 식품안전 관리(향후)	⇨	➡	➡	➡		지자체, 교육청, 학교
					⇨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자체
					⇨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자체, 교육청
• 학교 및 학교 주변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학교 및 학부모, 전담관리원, 지자체, 지방청, 소비자단체 등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	⇨	➡	➡			지자체, 교육청, 학교, 모니터링 인력
-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강화	⇨	➡	➡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자체, 모니터링 인력
- 전담관리원 육성 및 역량 강화	⇨	➡	➡			지자체, 교육청, 학교, 모니터링 인력
- 학교 주변 길거리 판매업소 및 학원가 주변 모니터링 (향후)					⇨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자체, 교육청, 모니터링 인력

세부사업	시행기간					추진 주체 및 참여기관
	~2009	2010	2011	2012	2013~	
• 우수판매업소 지정·확대 및 위생 취약업소 지원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및 확대		→	→	→		지자체, 식품의약품안전청
-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 점검 및 취약업소 시설개선 지원 등	⇒	→	→	→		지자체
•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모니터링 -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비중 감소	⇒	→	→	→		식품의약품안전청,
- 고열량·저영양 식품 모니터링 강화 - 판매자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인식 제고 방안 마련 등	⇒	→	→	→		지자체, 어린이 기호식품 공급 및 판매업소

1-2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수입업소 안전관리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 ☐ 저가의 위생취약국 제품의 수입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중 수입제품이 19.8% 차지
- 초등학교 주변에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54%는 100원 이하의 제품임(식품의약품안전청, 2009b).

2. 정책 추진방향

- ☐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위생관리 수준 향상
- 제조업소 지도·점검 강화: 일반 식품보다 엄격한 위생 관리 규정 적용하여 제조자 위생 교육과 어린이 기호식품의 기준과 규격 강화.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위생 수준의 유지
 -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HACCP 지정 확대: 제조단계에서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의 HACCP 제도 참여를 유도함. HACCP

도입 확대를 위한 교육 및 기술 지원

-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과 유통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 저품질 수입식품 관리 강화

- 위생취약국에서 제조된 식품의 현지 생산업체의 정기적 점검
- 저품질 수입식품 유통업체 관리 시스템 구축: 저품질 식품 수입, 유통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 수입식품 원료 검사시 식품공전에 규정된 항목 외에 위해가능물질에 대한 검사 강화

□ OEM 수입식품 현지 생산업체 위생 점검 의무화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입식품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해외 생산업체에 대한 원료, 시설, 공정, 완제품 관리의 위생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함(식품의약품안전청, 2009).
- 수입식품 현지 제조업체 현장 점검 결과 식약청의 세부점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제조업체를 ‘우수수입업체’로 등록하여 통관시 혜택을 부여해주는 ‘우수수입업체 등록제도’ 시행(식품의약품안전청, 2009).

○ 연차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세부사업	시행기간					추진 주체 및 참여기관
	~2009	2010	2011	2012	2013~	
•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수준 향상 - 제조업소 지도·점검 강화, 정기적 모니터링	⇒	➔	➔	➔		지자체, 식품산업체, 어린이 기호식품 공급 및 판매업소
-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HACCP 지정 확대	⇒	➔	➔	➔		지자체, 식품산업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 저품질 수입식품 관리 강화 - 위생취약국 현지 수입업소 관리 강화	⇒	➔	➔	➔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자체, 식품산업체, 어린이 기호식품 공급 및 판매업소
- 저품질 수입식품 유통업체 관리 시스템 구축 등			➔	➔		

1-3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미디어 환경 조성

1. 배경 및 필요성

☐ 광고에의 무분별한 노출☐ 어린이 TV 시청시간 및 선호 프로그램

- 어린이가 선호하는 TV 시청시간대는 평일의 경우 오후 8~10시, 일요일의 경우 오후 2~4시, 6~8시이며, 청소년은 평일은 오후 10시 이후, 일요일은 오후 6~8시 사이임 (한상필, 2009).

☐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 현황

- TV: 방영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 중 과자(12.2%), 라면(11.7%), 아이스크림(9.4%), 피자(8.0%)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정크푸드: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 중 햄버거, 피자, 치킨, 콜라 등의 정크푸드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TV(72.8%)가 가장 높으며, 라디오 광고의 62.5%, 인쇄 광고의 38.4%를 차지함(한상필, 2009).

☐ TV 식품광고의 영향력

- 어린이들이 식품광고를 접하는 매체는 주로 TV임(김경희 등 1997).
- 어린이들은 식품광고를 본 후 해당 식품에 대한 구매 욕구를 느낌(한상필, 2009; 임경애, 2006).
- 식품 광고 주인공 모델의 큰 영향

☐ 식품광고의 규제의 필요성

- 어린이 기호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방안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일정 시간대의 광고 규제가 필요함(정기혜, 2007).
- 학부모의 69.0%는 식품광고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TV와 인터넷 광고 규

제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함. 특히 탄산음료, 피자, 햄버거, 과자에 대한 규제 요구도가 높음(한상필 2009).

- TV 식품광고가 어린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 시간대를 규제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논란 제기됨(한상필 2009).

□ 식품광고의 규제에 대한 관련 업계의 입장

- 식품업계: 법적 강제규제보다는 자율규제 선호함. 비만과 어린이 기호식품의 연관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광고 규제는 광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방송 환경상 시간대 규제는 업계의 생존권과 관련하여 적절하지 않으며, 어린이 프로그램 시간대의 범위가 모호함.
- 광고업계: 전체 광고의 약 20%를 차지하는 식품광고가 규제에 의해 감소하면 광고제 뿐만 아니라 방송사의 재원 확보에 영향을 미침. 식품광고와 비만의 관련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규제 반대. 어린이 프로그램 시간대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간대 규제는 광고업계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와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우리나라의 어린이 대상 식품광고 규제 현황

- 청소년보호법과 방송광고심의규정에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식품광고 포함)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음. 2008년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자율규제가 확대되고 있음.
- 2009년 4월 17~21시와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중간광고 시간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TV 광고 금지 및 어린이의 잘못된 식생활 조장 광고 내용 변경 및 금지,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 금지 위반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음(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 정책 추진방향

□ 방송 및 비방송 광고 식품업계 자율규제 도입

- 광고 제한을 점진적으로 업계 자율규제 중심으로 도입

- 광고 제한 대상 제품 및 프로그램, 시간대 설정시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 필요함.

□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규제(안) (한상필 2009)

- 1안: 광고 시간대 규제 없이 정크푸드 TV 광고 내용에 대한 규제. 가장 낮은 수준의 규제이므로 업계에서 수용 가능한 안임. 그러나 업계 자율규제가 잘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규제 효과가 미약할 수 있으며, 정크푸드의 정의가 모호함.
- 2안: 어린이 기호식품 TV 광고 내용과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 광고 내용 및 방송시간 규제. 광고 시간 규제는 프로그램 시청률과 어린이 시청점유율을 고려하여 시간대를 정함. 어린이 프로그램 및 시간대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시청률과 시청점유율을 고려하여 광고 규제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음. 그러나 시청률 조사의 신뢰성과 조사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3안: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오후 5-7시 TV 광고를 규제하고, 광고 내에서 캐릭터, 유명인 등의 건강 관련 주장 금지. 어린이 기호식품의 TV 광고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인터넷 배너광고 내용 규제. 가장 강력한 규제안으로 관련 업계의 반발이 우려됨.

□ 어린이 시간대, 어린이 프로그램 외에 방영되는 식품광고 심의

- 어린이 시간대 외의 식품광고에도 어린이가 노출되므로, 어린이 시간대 외와 성인 대상 프로그램 전후에 방영되는 식품광고도 적절한 심의를 하여 어린이의 식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함.
- 영국(장기간 조사를 통한 단계적 접근)과 캐나다(어린이 시청 점유율 고려하여 규제) 등의 외국의 어린이 광고 규제 사례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식품광고 규제 방안을 수립해야 함.

□ 미디어의 정보 제공 역할 권장

- 어린이 대상 식품광고가 단순한 상업적 내용보다는 식품 및 영양에 대한 정보 제공 역할 수행
- 광고 자막을 통한 정보 제공: 칫솔 그림(벨기에, 아일랜드), 치약 로고 등(한상필 2009)을 이용한 구강건강 홍보

□ 어린이 대상 식품광고 심의위원회 설립

- 현재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내 3개의 심의위원회가 각각 지상파 TV와 라디오(제1광고심의위원회), 케이블TV, 위성(제2광고심의위원회), 인쇄매체(제3광고심의위원회)의 광고를 심의하고 있음.
- 식품·영양전문가, 의사, 광고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모든 매체의 어린이 대상 식품광고 심의를 전담으로 할 수 있는 별도의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 심의위원회(가칭)’ 설립이 필요함.

○ 연차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세부사업	시행기간					추진 주체 및 참여기관
	~2009	2010	2011	2012	2013~	
• 방송 및 비방송 광고 식품업계 자율규제 도입 - 고열량·저영양 식품, 미끼상품 TV광고 제한 (캐릭터 상품 광고 제한)			➡	➡	➡	식품의약품안전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식품산업체, 광고업계, 소비자단체
- 식품업계 자율규제 방안 마련 확대				➡		
- 비방송 고열량·저영양 식품광고 자율규제 권 장				➡	➡	
- 어린이 식품 광고 모니터링 강화	➡		➡	➡	➡	

2. 어린이의 올바른 식품선택 보장

2-1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교육·홍보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 교육 체계 및 표준화 미흡

- 영양교육의 체계 및 교육자료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과정이 정규화되어 있지 않아 간헐적으로 식생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이영미, 2009).

☐ 우수한 교육 자료의 부족

- 자료는 양적으로 팽창하였으나 맞춤 교육이 가능하며, 현장 적용 후 평가를 통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된 우수한 교육 자료가 부족하며, 교육 시행 후 교육의 효과를 평가한 자료는 전무한 실정임(이영미, 2009).

☐ 대상별 정보 제공 사이트 부족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영양 및 식품 정보 제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이트 부족함(서정숙, 2006; 이영미, 2007).
- 연령에 따른 성장단계별 영양 정보 제공이 필요함.

☐ 홍보와 활용 부족

- 웹상에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홍보가 부족하여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이영미, 2007)

☐ 어린이의 식생활 행태의 특성

- 어린이는 간식 등 식품을 직접 구매하여 먹는 주체임(문은숙, 2007). 어린이의 39.9%, 청소년의 46.0%는 간식을 스스로 챙겨먹음(한상필, 2009).
- 어린이와 청소년 모두 용돈을 군것질에 가장 많이 사용하며, 특히 청소년(37.8%)이 어린이(29.0%)보다 용돈을 군것질에 사용하는 비율 높음(한상필, 2009).
- 식품 선택의 주체인 어린이의 식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영양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

□ 어린이의 건강 및 식생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증가

- 어린이의 건강 및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학계와 관련 기관에서 식생활 교육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음.

□ 어린이 대상 영양교육

- 27%의 초등학교에서 영양교육 실시(이영미, 2009)
- 초등학교 교과목 중 식생활 관련 교육과정안은 약 10%. 학년이 증가할수록 영양 관련 내용이 감소함(이영미, 2009).
- 학계 및 정부기관 등에서 개발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한 내용보다 종합적인 영양과 식생활 개선을 위한 자료가, 직접 교육자료보다 리플렛, 포스터, 소책자, 동화책, 가정통신문 등의 간접 교육자료가 많음(이영미, 2009).

□ 영양교육에 영양교사 활용 미흡

- 2005년 영양교사 제도 도입
- 영양교과의 비정규화 및 영양교사의 급식업무 가중, 영양교사 개인의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영양교사 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이미정 등, 2008).

□ 소비자단체의 정보 제공

- 식품안전 정보 제공: 2003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식품위해정보시스템(Hazard Food Data System: <http://food.consumer.or.kr>)을 구축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식품별, 구입처별, 불만유형별, 구입방법별, 지역별 식품위해정보를 제공하고 있음(강정화, 2007).
- 민간 소비자단체 및 사회단체의 식생활 교육, 캠페인이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 정책 추진방향

□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 교육·홍보 전달 강화와 실천기술 증진

- 언론 및 지역사회에서의 캠페인을 통해 영양교육의 필요성을 홍보
- 식품안전 및 영양 교육 우수 실천사례 발굴을 통한 효율적인 교육 방법의 확산 도모
- 어린이 영양상담 서비스 운영 및 지원: 관련 학술단체(영양학회, 영양사협회 등)에 위탁하여 어린이 영양상담을 위한 핫라인 또는 인터넷 사이트 개설, 어린이와 학부모가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예: 호주영양재단 사례 원용)

- 취약계층 아동 식생활 교육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 식생활의 잠재 위험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한부모 가정 아동, 다문화 가정 아동 등)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교육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교육자료 및 웹사이트 홍보 및 접근도 모니터링: 개발된 교육 자료 및 웹사이트는 홍보를 통해 활용성을 높이도록 함. 사용자의 접근도 및 이용 행태를 분석하여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홍보를 해야 함.

□ 학교 교육을 통한 어린이 식생활 교육 지원 강화

- ① 학교에서의 영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교과 과정 내용에 반영
- ②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
 - 대상자 수준별 맞춤 정보 제공, 교육자료 차별화
 - 다양한 매체 개발과 교육 시행 현장 고려
- ③ 대상자의 흥미 유발을 고려한 교육자료 개발, 체험학습을 활성화하여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식생활 지식을 체험적으로 습득하도록 함.

□ 미디어, 소비자단체, 산업 부문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교육 역할 강화

- 미디어: 정규·특집 프로그램, 캠페인을 통한 식품 안전 및 영양교육 정보 전달 역할
- 소비자 단체: 소비자가 식품안전행정은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 리더 집단을 발굴·육성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수행. 또한 소비자(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진행
- 산업계: 소비자 스스로가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수행. 기업 홈페이지를 이용한 영양교육, 이벤트 개최, 제품 포장에 영양정보 표기 등의 여러 가지 방법 이용 가능

□ 관련 인력(교사, 보건소 인력 등) 교육 훈련

- ① 영양교사의 활용
- ② 학교 교직원 교육
- ③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교사 및 원장에 대한 교육훈련 제공

□ 다기관 협력

- 관련 정부 부처, 지역사회, 식품 제조·유통업계, 학교, 영양전문가, 교육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협력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 연차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세부사업	시행기간					추진 주체 및 참여기관
	~2009	2010	2011	2012	2013 ~	
•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 교육·홍보 전달 강화와 실천 기술 증진 - 캠페인 및 우수 실천사례 발굴		➡	➡	➡	⇨	식품의약품안전청, 학교, 교육과학기술부, 언론, 학계, 소비자단체
- 어린이 영양상담 서비스 운영 및 지원		➡	➡	➡		영양사협회, 영양관련 학회
- 취약계층 아동 식생활 교육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아동)				➡	⇨	학계, 보건복지가족부 아동복지부문, 지자체
- 교육·홍보에 대한 접근도 모니터링과 결과 피드백	⇨		➡	➡		식품의약품안전청, 복지부
• 학교 교육을 통한 어린이 식생활 교육 지원 강화 - 식품안전 및 영양 관련 교과 내용 개선 지원	⇨	➡	➡	➡		학계, 교육청, 학교
- 학교 영양교사, 영양사의 영양교육 역할 강화		➡	➡	➡		학계, 교육청, 학교
• 미디어, 소비자단체, 산업, 지역사회 부문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 교육 역할 강화 - 미디어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 교육 역할 강화				➡	⇨	언론, 미디어
- 소비자단체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 교육 역할 강화(소비자 감시활동과 병행하여 추진)				➡	⇨	소비자단체
- 식품산업체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 교육 역할 강화				➡	⇨	식품산업계
- 지역사회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 교육 역할 강화(방과 후 학교, 복지기관, 보건기관 등과 연계하여 추진)				➡	⇨	지자체, 복지기관, 보건소
• 관련 인력(교사, 보건소 인력 등) 교육 훈련 - 교사 현장과 협조 network 구축				➡	⇨	학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식품의약품안전청
- 교사(일반교사, 영양교사 등) 교육 훈련 지원				➡	⇨	학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학계, 식품의약품안전청
- 지자체 식품위생 및 보건소 인력 교육 훈련 및 역량 강화			➡	➡	⇨	지자체, 식품의약품안전청

2-2

가정에서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부모 교육과 정보 제공

1. 배경 및 필요성

☐ 학부모 식생활 교육☐ 언론을 통한 식품영양 정보 습득 기회 확대

- 성인 소비자들은 식품 안전 관련 정보를 주로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와 신문, 잡지 등의 인쇄매체, 인터넷에서 얻음(강정화, 2007; 이경애, 2007; 이기현, 2006)
- 소비자들은 효과적인 식품 안전정보 전달 매체가 언론(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 67.1%, 신문, 잡지 등의 인쇄매체 9.4%)이라고 인식함(강정화, 2007).

2. 정책 추진방향

☐ 부모 교육과 홍보 전달 개선

- 학교에서의 정기적인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부모총회를 통한 교육, 지역사회 문화센터, 언론 홍보, 정부기관과 기업체의 홈페이지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 교육 수행(이영미, 2009).
- 낮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맞벌이 부모를 위한 저녁 및 주말 교육 기회 확대

☐ 미디어를 통한 부모 교육 정보 제공 확대

- 정보 접근성이 뛰어난 인터넷 및 언론을 이용한 부모 대상 교육 제공
- 일반적인 식생활 교육보다 성장기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모 양육 방식을 포함한 식생활 교육 필요
-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인터넷 게시판, TV방송·라디오 프로그램 질의응답 등)을 이용한 교육 효율성 증대

☐ 소비자 교육의 일환으로 가정에서의 식생활 실천을 위한 포괄적 교육과 정보 제공 강화

- 소비자에게 식품, 영양, 식품안전, 소비자 권리,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의 기회에 관해 소비자에게 포괄적 식생활 정보 제공

○ 연차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세부사업	시행기간					추진 주체 및 참여기관
	~2009	2010	2011	2012	2013~	
• 부모 교육과 정보 제공의 확대 - 가정에서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부모 교육과 정보 제공 기회의 확대 - 학부모회 및 민간 사회단체와 연대한 학부모 식생활 캠페인 전개		➡	➡	➡	⇨	학교, 교육청, 학계, 학부모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청
- 미디어를 통한 부모 교육 정보 제공 확대		➡	➡	➡	⇨	미디어, 학계, 학부모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청

2-3

신뢰성 있는 식품안전과 영양 정보 인프라 확보

1. 배경 및 필요성

☐ 대안 제시가 없는 정보 제공

☐ 신뢰성 있는 정보의 부족

☐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식생활지침 미개정과 식생활지침의 어린이 식생활에 반영 미흡

2002년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식생활실천지침 발표

2005년 성인을 위한 식생활지침 미개정

2009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식생활지침 개정 연구사업 진행중(보건복지가족부)

2. 정책 추진방향

☐ 신뢰성 있는 식품안전 및 영양 정보 접근도 향상

- 식품영양정보원(가칭) 설립: 식품영양 교육·홍보 자료와 정보의 개발 보급의 효율화를 위한 중앙기구 설립 필요

- 기존에 개발된 식품안전 및 영양 교육 자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자료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웹 기반 구축

- 교육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평가를 위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는 효과평가 도구의 개발(이경애, 2007)
-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 및 시행 후 효과를 평가하여 추후 개선사항을 찾아내어 보다 나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
- 개발된 프로그램은 콘텐츠의 지속적인 보완 및 수정을 통해 사회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우수 교육자료로 입증된 프로그램의 활발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 콘텐츠의 지속적인 유지와 개선을 위한 유지비용을 정부 등에서 지원하도록 제도화하여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관리(이경애, 2007).

□ 어린이 식생활지침 개정 보급과 실천을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의 개발과 효과적 전달

□ 효율적인 식품안전 위해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 방안 마련

○ 연차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세부사업	시행기간					추진 주체 및 참여기관
	~2009	2010	2011	2012	2013~	
• 신뢰성 있는 식품안전 및 영양 정보 접근도 향상 - 식품영양 교육·홍보 자료와 정보의 개발 보급을 효율화하고 종합하기 위한 지원 기구의 설립(식품영양정보원 설립)			➡	➡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학계
- 신뢰성, 일관성있는 식품안전 및 영양교육 매체 개발 보급		➡	➡	➡		식품의약품안전청, 학계, 언론, 소비자단체
-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 교육·홍보 콘텐츠 DB 구축 및 웹기반 활용시스템 개발 운영			➡	➡	⇨	식품의약품안전청, 학계
- 교육홍보 매체 효과성 및 접근성 평가			➡	➡	⇨	식품의약품안전청, 학계
• 어린이 식생활지침 개정 보급 - 어린이 식생활지침 개정 보급(보건복지가족부)		➡	➡	➡	⇨	보건복지부, 학계, 소비자단체

2-4

알기 쉬운 영양표시 개선

1. 배경 및 필요성

□ 가공식품 영양표시제(후면표지제, BOP)

- 1995년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영양표시에 관한 규정 마련. 2000년도부터 표기 대상 가공식품 및 영양소의 종류 확대
-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시행율: 2002년 18.7%(이현정 등, 2002)에서 2004년에 27.5%(오세영, 2004), 2006년 79%(권광일 등, 2007)로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시행율이 증가, 영양표시제가 정착되고 있음.

□ 알기 쉬운 영양표시제(전면표시제, FOP) 도입 필요성 및 논란 제기

-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제품 포장 뒷면, 또는 측면에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으나 일부 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GDA 방식의 가공식품 포장 전면에 영양성분을 표기하는 영양성분 전면표시제(FOP: Front of Pack)를 실시하고 있음.

□ 각기 다른 영양성분 표기

- 제품마다 각기 다른 1회 분량 또는 제품 내용량을 기준으로 영양표시를 함(소비자안전센터, 2008).
- 잘못된 영양성분 표시

□ 낮은 활용률과 이해도

- 낮은 영양표시 활용률과 낮은 영양표시 이해도
-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식품을 구매할 때,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빠르게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영양표시제를 신호등 표시 등과 같은 FOP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외식 영양표시제

- 외식 이용 증가: 식생활의 외식 의존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외식은 1회 제공분량이

많고, 나트륨, 지방 함량과 열량이 높음. 어린이·청소년이 선호하는 패스트푸드는 당, 나트륨 등 특정 영양성분을 과도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반면 영양소 밀도가 낮음. 어린이와 청소년은 가정식이나 급식보다 나트륨 섭취가 많음 (정효지, 2006; 김숙희 등, 2003; 질병관리본부 등, 2007).

- 전세계적으로 식사에서 외식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영양표시의 범위를 사전포장식품 (prepacked food)를 넘어 식당과 패스트푸드 상점의(주문 시점에서) 정기적으로 제공 되는 표준화된 식품 항목으로 확대 추세

※ 유럽에서 포장 전면에서 흔히 사용되는 자발적 형태 예시

- Guideline Daily Amounts
- Color-coded system (eg. 신호등)
- Color-coded GDA(eg. retailer ASDA(영국), Nutri-pass(프랑스))
- Health logs (스웨덴 keyhole, 업계 중심 사례 네덜란드 Healthy Choices, 미국 Smart Choice Program, 캐나다 Health Check)

- 외식업체의 영양표시 시범 실시: 패스트푸드 및 외식업체의 영양성분표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직 없으나 외식이 식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외식업체 영양 성분 표시의 필요성이 제기됨(홍순명 등, 2007).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1월부터 외식업체 영양표시 시범사업 실시 중(패스트푸드점(햄버거), 피자업체, 커피전문점, 제빵업체와 치킨업체 등)

□ 영양표시제 교육

-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nutrition.kfda.go.kr/nutrition>)에서 영양표시 소비자 교육을 위한 동영상 및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2009년 3월부터 지하철 내부 및 역사에 영양표시제에 대한 동영상 광고 방영 중임(식품의약품안전청, 2009d).

2. 정책 추진방향

□ 알기 쉬운 영양표시제(FOP)의 자율시행과 단계적 도입

- ① 영양소 함량 정도의 표기: 소비자들이 제품 간 영양소 함량의 차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양소 함량의 정도를 표기를 위한 업체의 자율 도입 권장

② 표시 기준량의 통일

③ 영양표시제 교육

□ 영양표시 실시 외식업체 확대 및 외식의 영양성분표시를 위한 기반 마련

□ 영양표시 모니터링 강화

□ 영양표시에 대한 홍보

○ 연차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세부사업	시행기간					추진 주체 및 참여기관
	~2009	2010	2011	2012	2013~	
- 알기 쉬운 영양표시제의 자율시행과 단계적 도입 - 알기 쉬운 영양표시제(예: 신호등 등 표시제) 자율 시행 확대			➡	➡	⇨	식품의약품안전청, 학계, 식품산업계
- 어린이의 영양표시 이용에 관한 소비자 연구			➡	➡	⇨	식품의약품안전청, 학계
- 알기 쉬운 영양표시 도입을 위한 산업체 지원				➡	⇨	식품의약품안전청, 학계, 식품산업계
- 알기 쉬운 영양표시제의 영향(소비자/산업체) 연구				➡	⇨	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 외식업체 영양성분 표시 확대 - 대형 패스트푸드업체 영양표시 자율 확대	⇨		➡	➡	⇨	식품의약품안전청, 학계, 패스트푸드업체
- 영양성분 자율 표시 시범 음식점의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청, 학계, 외식업체
- 영양표시 모니터링 강화 - 영양표시 모니터링	⇨	➡	➡	➡		식품의약품안전청, 학계, 식품산업계
- 영양표시 인식도, 소비자 교육·홍보에 대한 이용도 평가				➡	⇨	식품의약품안전청, 학계, 소비자단체

3. 어린이의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3-1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 공급 지원

1. 배경 및 필요성

☐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 도입 움직임

-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 고조를 계기로 일부 대기업에서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식품첨가물 저감화와 필수영양소 강화를 한 프리미엄 제품군 출시.
- 기존 제품보다 영양적으로 우수한 새로운 프리미엄 제품군은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음.
- 중소기업 및 영세 식품기업은 연구 인력 및 자금의 부족으로 신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 개선에 투자를 하기 어려운 실정임.

☐ 품질인증 제도 관리의 미흡 우려

- 선행연구에서 기존의 식품 품질인증표시제도의 사후관리와 활용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음(이계임 등, 2005). 품질인증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원인으로는 애매한 고품질 기준과 소비자 인식 부족, 영세한 생산자로 인한 품질관리와 판로 개척의 어려움,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 불신, 제도 홍보 부족 등이 있음(김성용 등, 2005).

☐ 식품산업체의 HACCP 참여

- 대부분의 대기업 식품업체는 HACCP에 참여하고 있으나 영세 식품업체들의 HACCP 참여는 활발하지 않은 실정임.
- 일부 대기업에서 중소 식품업체의 HACCP 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음.

2. 정책 추진방향

☐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확대

-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을 통한 지정 확대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확대

- 어린이 식품 건강친화 중소기업에 연구 개발비 지원 혜택을 주어 건강친화 제품 생산 독려
- 기존의 식품 품질인증표시제도의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제도의 명확한 기준 설정,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지속적인 사후 관리, 신뢰성 있는 인증제도 수립, 영세 생산자 지원을 통한 품질 향상 추진

○ 연차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세부사업	시행기간					추진 주체 및 참여기관
	~2009	2010	2011	2012	2013~	
• 우수 제품 생산·판매 지원 -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확대			➡	➡	⇨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자체, 식품산업계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확대			➡	➡	⇨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자체, 식품산업계

3-2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확보

1. 배경 및 필요성

□ 어린이 기호식품의 식품첨가물 과다 사용

□ 어린이 다빈도 기호식품

- 초등학생: 과채류음료, 면류, 과자류, 떡볶이 등의 즉석식품, 아이스크림, 햄 순으로 섭취비율이 높음(최성희, 2009).
- 고등학생: 라면, 과채류음료, 과자류, 빵류, 즉석식품류, 햄 순으로 섭취비율이 높음(최성희, 2009).

□ 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섭취 현황

- 당 섭취 현황: 13~19세 연령대가 당 섭취량이 가장 많은 집단임(1일 평균 61g). 1일

평균 당 섭취량은 7~12세 53g, 1~2세와 3~6세 43g로, 우리나라 어린이의 당 섭취량은 WHO의 당 섭취 권고량(섭취열량의 10% 미만)을 초과함(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 트랜스지방 섭취 현황: 청소년 0.477g/일(섭취 열량 대비 0.133%), 유아동군 0.363g/일(섭취 열량 대비 0.127%) 섭취. 성별과 트랜스지방 함유 간식 섭취 습관이 트랜스지방 섭취에 영향을 미침(김미경, 2006). 이는 가공식품의 트랜스지방 저감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의 조사 결과이므로, 현재는 트랜스지방 섭취량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나트륨 섭취 현황: 7~12세의 1일 나트륨 평균 섭취량은 4086.8mg, 13~19세는 4938.7mg으로, 이는 각각 충분섭취량(AI: Adequate Intake) 대비 292.0%와 329.2%에 해당함(보건복지부, 2006).

□ 식품의 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함량

- 음식류: 길거리음식 100g 당 평균 나트륨 342mg, 당 6g을 함유하고 있어, 간식을 통해 한끼 식사수준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할 우려가 있음. 찌개 및 탕류의 나트륨 함량은 영양소 기준치의 1.5배 수준임(2,871mg)(식품의약품안전청, 2009g).
- 과자류: 제품에 표기된 영양소 함량을 영국 식품기준청(FSA)의 신호등 표시 적용 결과 제품의 77.1%가 지방, 91.4%가 포화지방, 65.7%가 당류, 10.0%가 나트륨의 적색 기준에 해당됨(소비자안전센터, 2008). 트랜스지방 함량은 1회 제공기준량(30g) 당 평균 0.1g. 수입과자류의 경우 국내제품에 비해 트랜스지방 함량 높음(식품의약품안전청, 2008a).

□ 식품첨가물의 사용 현황

- 최근 3년 간의 품목제조보고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내 어린이 기호식품에 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은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합성감미료임. 합성착색료는 2004년 이후 사용 감소 추세이지만 합성보존료, 합성감미료는 사용 증가 추세임(최성희, 2009).
- 1990년에 비해 2007년 국내 생산 제품의 보존료와 산화방지제의 사용량이 눈에 띄게 감소함. 대체물질(천연첨가물)의 사용, 제조 환경 및 유통의 개선이 보존료와 산화방지제 사용량 감소의 원인으로 보임(최성희, 2007).
- 국내 기업의 경우 2006년부터 아토피의 원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타르색소의 저감

화 노력을 기울임.

- 수입제품은 색소 사용에 변화 없음(최성희, 2006).

□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강화 및 안전성 평가 요구

- 어린이 기호식품에 적색 2호(하상도, 2005) 등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
- 섭취 빈도가 높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기준규격 차별화 제안

□ 식품첨가물 사용 관련 규정

- 2006년 9월부터 가공식품에 사용한 모든 식품첨가물을 표시하는 제도 시행 중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첨가물 사용기준을 강화하고 있음.

2. 정책 추진방향

□ 당, 나트륨 등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

- ① 기술 R&D 지원
- ② 저감화 유도를 위한 홍보

□ 어린이 기호식품 기준규격 강화

- ① 어린이의 식품첨가물의 섭취허용량 차별화
- ② 사전예방주의적 관점 도입
- ③ 식품첨가물의 안전한 사용 수준 설정을 위한 연구

○ 연차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세부사업	시행기간					추진 주체 및 참여기관
	~2009	2010	2011	2012	2013~	
• 당, 나트륨 등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 - 당, 나트륨 등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 기술 R&D 지원	⇒	➡	➡	➡	⇒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소기업청, 학계, 식품산업계
- 당,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중소기업체 교육홍보 및 지원			➡	➡		
-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을 위한 중소기업체 기술 개발 지원				➡		
• 어린이 기호식품 기준 규격 강화 - 어린이 기호식품 첨가물 등 위해물질 사용 규제 강화	⇒	➡	➡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산업계
- 어린이 기호식품의 식품첨가물 섭취량 평가	⇒	➡	➡			

3-3

우수 식품 및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

1. 배경 및 필요성

□ 학교 매점 내 비건강 식품의 판매

- 2006년 서울시 48개 중학교 매점을 조사한 결과 매점에서 많이 팔리는 제품은 빵, 우유류, 소시지, 젤리, 햄버거, 과자, 캔디 등이었음. 매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은 주로 인스턴트식품이나 청량음료가 대부분임. 생과일, 채소, 생과일주스 등을 판매하는 매점은 없었음(녹색소비자연대, 2007a).

2. 정책 추진방향

□ 학교 매점의 우수판매업소 지정 추진

- 전국 1,688개 학교 매점의 우수판매업소 지정 추진
- 학교 매점의 건강 식품(과일 등) 판매 권장 및 지원

□ 학교 내 탄산음료 자판기 판매 제한

□ 보육시설과 학교의 품질인증제품 및 건강한 식품 공급 확대

- 학교 내 판매 가능한 품질인증제품 및 건강한 식품의 공급 확대
- 보육시설 제공 간식을 건강한 식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지원

○ 연차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세부사업	시행기간					추진 주체 및 참여기관
	~2009	2010	2011	2012	2013~	
• 어린이의 우수 식품 및 건강한 식품 선택의 접근성 향상 - 학교 매점의 우수판매업소 지정 추진 - 학교 매점의 건강 식품 (과일 등) 판매 권장	⇒		➔	➔	⇒	식품의약품안전청, 학교,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 내 탄산음료 자판기 판매 제한(교육인적자원부)	⇒	➔	➔	➔		
- 보육시설과 학교의 품질인증 제품 및 건강한 식품 공급 확대				➔	⇒	보육시설, 학교, 지자체, 학계
• 식품산업체의 우수 식품 생산 기반 강화 - 식품산업체의 건강한 식품 생산 자율 참여 확대			➔	➔	⇒	식품산업계, 학계
- 식품산업체의 건강한 식품 생산의 점진적 확대			➔	➔	⇒	
- 건강한 식품 생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3-4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품질 개선

1. 배경 및 필요성

□ 급식 수혜 대상

- 영유아 보육시설 및 초, 중,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은 성장기 어린이 식생활의 일부를 책임짐. 현재 급식 수혜 대상은 약 900만명임(영유아 보육시설 급식: 약 97만, 유치원 급식: 약 54만, 학교급식 약 735만, 휴일 및 방학 중 아동급식: 약 20만)(윤지현, 2007).

□ 급식시설의 위생 수준 불량

- 보육시설의 위생관리, 식재료관리, 작업관리, 시설·설비관리, 안전관리, 급식경영관리 미흡
- 서울지역 초, 중, 고등학교 급식 시설에서 식자재의 위생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식자재에 제조자의 주소, 연락처 또는 내용량, 판매원 정보가 미표시된 경우가 있음. HACCP 시스템 적용을 위한 선행 조건(작업의 표준화, 선행요건 프로그램의 적용 미비)이 부족함(하상도, 2005).

□ 평가기준의 미흡

- 현행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의 보육시설 평가 인증 항목 중 급식과 간식에 대한 항목은 21인 이상 시설 80항목과 21인 이하 60항목 중 각각 3항목임. 평가기준이 주관적이며 모호하여 평가 인증을 받았다고 하여도 급식 품질의 우수성을 보장할 수 없음(양일선, 2008).

□ 영유아 단체급식의 법적 규정 미흡

- 학교급식은 영양관리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최저기준 미준수시 벌칙부과사항이 있으나(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치원법에는 영양관리 기준의 규정이 없으며, 영양관리 기준 미준수시 규제할 수 있는 법 조항 없음(양일선, 2008).
- 아동복지법 내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급식의 실질적인 위생 안전 실무 규정이 없어서, 영유아 단체급식의 질적 수준과 위생 상태 저하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 부족

□ 어린이 급식시설의 식단 작성 전문성 부족

□ 급식 관장부처의 이원화

- 영유아보육시설 급식은 보건복지가족부, 유치원급식과 학교급식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 어려움.
- 급식의 세부 사항에 대한 주무부서가 농림부(식품 원료, 축산물 가공식품의 안전성)와 식품의약품안전청(기타 가공식품의 안전성), 교육인적자원부(학교급식업무)로 나뉘어져 있음.

□ 결식아동 영양기준의 비효율성

- 현재의 결식아동에 대한 영양기준은 개정 전의 학교급식 영양기준을 사용한 것이며, 결식아동의 영양부족 가능성 등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임. 기존의 기준을 결식아동급식 현장에 이용하기에는 영양 전문 인력 부족 등의 문제 있음(윤지현 2007).

□ 급식 메뉴의 불량한 영양 수준

□ 영유아 단체급식 표준식단 및 레시피 제공 웹사이트 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08년부터 영유아 단체급식 표준식단 및 레시피 제공 웹사이트(<http://nutrition.kfda.go.kr/kidgroup>) 운영하고 있음.

□ 빈번한 단체급식의 식중독 발생

□ 급식 메뉴 실태: 당 및 나트륨 함량, 지방 함량이 높은 식단 사용 빈도가 높음.

- 급식메뉴 중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를 위한 노력: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서울시 교육청은 당, 나트륨을 줄인 단체급식 레시피를 개발하여 서울시 초·중·고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 책자 배포함(식품의약품안전청, 2009g).

□ 저소득층 어린이의 영양문제

- 결식아동 및 빈곤층 어린이는 지방을 열량 대비 적정 섭취비율보다 부족하게 섭취하는 비율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탄수화물로부터 섭취하는 열량의 비율이 높음. 단백질 식품(고기·생선·달걀·콩류)과 과일류의 섭취가 경우가 비빈곤층보다 많으나,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 부족 비율은 차이 없음(김혜련, 2007; 윤지현, 2007).

2. 정책 추진방향

□ 어린이 단체급식의 영양표준 개발 및 확산

- 식단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 급식시설을 위한 표준식단 제공과 어린이 급식시설의 표준식단 제공 및 급식 영양기준 설정
-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운영 중인 영유아 단체급식 표준식단 및 레시피 제공 웹사이트의 홍보를 통해 영유아 보육시설 급식 관리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

- 안 마련. 지속적인 식단의 개선 및 새로운 식단의 제공을 통해 제공 정보의 질적 향상
-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단체급식에 대한 대상별 영양공급기준 법제화 고려

□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성 확보

- ①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및 식품 공급
- ②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 ③ 식중독 발생시 신속검사, 원인규명체계 구축
- ④ HACCP 지정업소 확대
- ⑤ 취약시설 집중 지도 점검
- ⑥ 급식담당자 교육

□ 단체급식의 당, 나트륨 등 영양위해 성분 저감화

□ 취약계층 및 결식아동 급식의 위생 및 영양 품질 개선

○ 연차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세부사업	시행기간					추진 주체 및 참여기관
	~2009	2010	2011	2012	2013~	
• 어린이 단체급식의 영양기준 개발 및 확산 - 어린이 단체급식의 영양기준 개발, 시범사업 운영 확산			➡	➡		식품의약품안전청, 학계, 보건복지가족부
•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성 확보 -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및 식품 공급				➡	⇨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자체, 학교, 급식업계
- 어린이 단체급식 식중독 예방 관리	⇨	➡	➡	➡	⇨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자체, 학교, 급식업계
-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및 신속검사, 원인규명체계 구축			➡	➡	⇨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자체, 질병관리본부
- 취약시설 집중 지도 점검			➡	➡	⇨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자체, 질병관리본부
- 어린이 단체급식시설의 HACCP 지정 확대			➡	➡	⇨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자체, 학교, 급식업계, 질병관리본부
• 단체급식의 당, 나트륨 등 영양위해 성분 저감화 - 당, 나트륨 저감화 조리 기술 및 지원 등				➡	⇨	식품의약품안전청, 학계, 지자체, 학교, 급식업계
• 취약계층 및 결식아동 급식의 위생 및 영양 품질 개선 - 아동복지사업 및 지역 보건사업 등과 연계 등				➡	⇨	보건복지가족부(아동복지부서), 교육과학기술부, 지자체, 학교, 교육청

3-5

어린이 단체급식 지원체계의 효율적 구축

1. 배경 및 필요성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근거 확보

- 식품의약품안전청 ‘어린이 먹거리 종합대책’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 제21조에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 영유아 100인 미만의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는 영양사 배치가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비전문인에 의해 급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지자체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의 비용 부담으로 추진 미비

2. 정책 추진방향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립 및 효율적 관리운영 체계 도입

- 제도적 기반 구축: 중앙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관리감독권 부여(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업무와 확인, 점검업무 포함), 유아급식 평가등급 제도 도입(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유아급식 품질 전반에 대한 평가 및 보호자에게 정보 제공), 어린이 급식비용의 명확화 및 투명화, 영양공급 기준 법제화를 통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제도적 기반 구축
- 운영 기반 구축: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매뉴얼 개발 및 네트워크를 구축(온라인 웹사이트)하여 원활한 급식 지원과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급식 지원 추진
- 학교 급식의 질적, 양적 수준의 보장을 위한 조직 신설 및 역할 설정 등의 학교급식 지원 인프라 강화·구축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 체계 도입

-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연계(박희근, 2008; 양일선, 2008)
 - 도농복합형(농촌형 포함) 연계모형: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년·월간 식재료 소요량을 통보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 납품 업무 담당

- 도시형 연계모형: 유통업체가 타 지역 학교급식지원센터로부터 납품을 받아 어린이 시설 급식소에 납품하는 형태 등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용 편익 분석

□ 영국 School Food Trust에서 학교 급식 지원을 위해 도입한 School FEAST네트워크 원용

- 영국의 이동학교가족부(DCSF)산하 School Food Trust에서는 영국의 학교급식 표준을 설정하고,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인력훈련을 지원하고 급식요건을 설정하기 위해 School FEAST (Food Excellence And Skills Training) centers 또는 파트너십으로 알려진 네트워크를 개발하여 학교 조리사와 급식업자의 기술 향상 도모하고, 학교 급식을 제공하는데 관련된 모든 인력들에 대한 기술과 지식 교육 훈련 및 요건 제공, 각종 교육도구와 매뉴얼 보급 등을 지원 역할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운영 추진이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접근방법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력하여 추진

○ 연차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세부사업	시행기간					추진 주체 및 참여기관
	~2009	2010	2011	2012	2013~	
•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설립 및 효율적 관리운영 체계 도입						지자체,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학교, 영유아보육시설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 재정·인력 기반 확보, 기술지원			➡	➡		
- 어린이 단체급식 지원 네트워크의 구축 및 효율적 운영체계 도입				➡		
-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비용편익 분석 등	➡	➡				학계, 식품의약품안전청

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기반 강화 및 모니터링

4-1

안전관리 제도 정착 기반 마련

1. 배경 및 필요성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2008년 3월 21일)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및 법 시행(2009년 3월 22일)
 - 일선 지자체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설정, 우수판매업소 지정, 고열량·저영양 식품 홍보 등의 사업 시작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을 위한 고시(2009년 5월 8일, 식약청고시 제25~28호)
 - 어린이 고열량 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식약청 고시 제25호)
 -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 (식약청 고시 제26호)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식약청 고시 제27호)
 -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항목 및 방법 등 (식약청 고시 제28호)

2. 정책 추진방향

- ☐ 법령 시행 정착 및 제도 보완
 - 개정이 필요한 법령의 내용 발굴 및 개정 추진: 시행 과정상 문제가 발생하는 사항 파악 및 개선 방안 모색
 - 지자체 시행 지침 제정 및 지방조례 제정 촉진
 -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모니터링: 현행 특별법에서 누락된 어린이 다소비 식품(흰 우유, 두유 등)에 대한 기호식품 설정 여부 재검토 및 관련 부처 협의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정책 수행 지원
 - 지자체, 식품산업체, 기호식품 유통·판매업소 관계자별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및 교육과 홍보를 통한 정책 수행 지원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분야 재정 및 인력 기반 확충 및 역량 강화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인력 확보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사업 시행 예산 확보
- 지자체 공무원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 연차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세부사업	시행기간					추진 주체 및 참여기관
	~2009	2010	2011	2012	2013 ~	
• 법령 시행 정착 및 제도 보완 - 개정이 필요한 법령의 내용 발굴 및 개정 추진	⇒	➡	➡			식품의약품안전청, 학계
- 지자체 시행 지침 및 지방조례 제정 촉진	⇒	➡	➡	➡	⇒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자체
-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모니터링 등	⇒	➡	➡	➡		식품의약품안전청, 학계
- 관련 정책과 사업의 규제 영향 평가 내실화				➡	⇒	식품의약품안전청, 학계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정책 수행 지원 - 지자체, 업계 등 대상별 제도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교육·홍보		➡	➡	➡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자체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분야 재정 및 인력 기반 확충 - 지자체 조직 및 인력의 확보		➡	➡	➡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자체
- 지자체 담당 인력의 역량 강화		➡	➡	➡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자체

4-2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 다원화된 식품안전관리체계

- 식품안전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수산부, 농림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국세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9개 부처 및 각 산하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음(권배근, 2007).

- 이로 인해 식품안전관리 정책의 효율성 저하, 신속성, 일관성, 통일성 부족 등의 문제점 발생(류창호, 2004).

□ 유통업계와의 협력 사례

- 2009년 4월부터 위해상품에 대한 정보를 유통업계에 전달해 소비자가 위해상품 구매 시 경보음이 울려서 위해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로는 차단하는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 가동 시작(식품의약품안전청, 2009a).
- 식품의약품안전청과 4대 유통협회 간 유통 식품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해 식품의 신속한 판매 차단과 회수, 폐기, 식중독 예방관리 활동 강화하기 위한 노력 추진 중(식품의약품안전청, 2009e).

□ 소비자단체와의 협력 사례

- 서울시는 (사)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2009년 5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넷째 토요일에 ‘안전한 식품, 건강한 밥상’을 실천할 수 있는 식품안전 캠페인을 개최하고 있음. 매월 캠페인 주제를 다르게 하여, 소비자에게 식품안전 자료를 배포하며, 체험 코너를 운영함(녹색소비자연대, 2009a).
- 강동구는 (사)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강동구 어린이 건강클럽 운영학교 12개교에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음(녹색소비자연대, 2009b).

2. 정책 추진방향

□ 어린이 식품 관리 관련 정부 부문의 협력 강화

- 부처 간 어린이 식품 관리 협조체계 구축: 다원화된 식품안전관리 정부 부처의 정책 수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간 유기적인 협조 강화 및 정보 공유

※ WHO, 2차 유럽 식품영양 실행계획 추진의 1단계로 제시한 Multi-sectoral government mechanism 강화 및 “farm-to-fork” 접근법을 사용한 intersectoral food safety system 강조

※ EC, White Paper on Nutrition에서 cross-sectoral 협력 강조

- 중앙·지방 정부 간 어린이 식품 관리 협력 강화: 상위 부처의 하달식 명령체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의 정책 수행 및 협력 관계 구축.
- 지자체 식생활안전 업무 보고체계의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관리 효율 증대

□ 식품산업계와 파트너 강화와 책임 공유

- 식품산업계와 협력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및 영양교육 사업 공동 기획·추진
- 식품산업계에서 건강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 소비자단체와 파트너십 강화

-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및 영양교육 사업 공동 기획·추진
-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의 소비자 교육, 홍보 사업 지원

□ 국제협력 강화

- 국제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강화: 어린이 먹을거리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 정부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공유하며 관련 정책 발전시킴.
- 어린이 기호식품의 CODEX 의제화 추진: 우리나라 정부의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CODEX에서의 어린이 먹을거리 관련 국제 표준, 지침, 권고 제정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음.
- 국제기준과의 조화 추구 및 과학적 근거의 지속적 확보를 위한 연구 강화: 어린이 기호식품 수출·입시 발생할 수 있는 통상마찰을 대비한 국제기준과의 조화 추구 및 지속적 연구 필요
- 민간 부문 및 지자체 주도의 사업 확대: 제외국의 어린이 먹을거리 관련 사업을 하는 소비자 단체와 우리나라 소비자 단체와의 협력 체계 마련.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을 민간 및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전환하여 통상마찰 최소화
- 국제기구와의 협력: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UNICEF(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등 건강과 어린이 관련 사업을 펼치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관심 증대 가능할 것임.
- 국제협력과 통상마찰에 대비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의 강화

- 국제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 제외국 관련 기관 및 학자들과 우리나라 어린이 먹을 거리 안전관리 사업 경험 공유 및 발전 방안 모색

○ 연차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세부사업	시행기간					추진 주체 및 참여기관
	~2009	2010	2011	2012	2013~	
• 어린이 식품 관리 관련 정부 부문의 협력 강화 - 부처 간 어린이 식품 관리 협조체계 구축		➡	➡	➡	⇨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농수산식품부
- 중앙·지방 정부 간 어린이 식품 관리 협력 강화(지자체 보고체계의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등)		➡	➡	➡	⇨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자체
• 식품산업계와 파트너십 강화와 책임 공유 - 식품산업계와 파트너십 구축 및 지원체계 구축		➡	➡	➡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산업계, 지자체
• 소비자단체와 파트너십 강화 - 소비자단체, 시민사회와 파트너십 강화		➡	➡	➡	⇨	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 국제협력 강화 - 국제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강화			➡	➡	⇨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외국 관련기관, 지자체, 학계, 소비자단체
- 어린이 기호식품 CODEX 의제화 추진			➡	➡	⇨	
- 국제기준(WTO, SPS 협정, TBT 협정)과의 조화 추구 및 과학적 근거의 지속적 확보를 위한 연구 강화			➡	➡	⇨	
- 중앙정부에서 민간 및 지자체의 주도적 사업 수행으로 전환하고 민간과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	➡	⇨	
- 국내외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체계를 통한 대응				➡	⇨	
- 국제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			➡	➡		

4-3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 모니터링 및 평가

1. 배경 및 필요성

□ 어린이·청소년 대상 식생활 모니터링 현황

-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전 국민 대상. 식습관 및 식품섭취 조사 항목 포함
- 계절별 식품섭취량 특별조사(식품의약품안전청): 19세 이하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대상 식품섭취 조사
- 청소년 건강행태조사(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교육과학기술부): 중·고등학교 재학생 대상. 식습관 조사 항목 포함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지수의 선정

- 어린이 먹을거리 관련 연구 및 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적절한 지표를 개발하여 사업의 내용을 평가하고,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성 대두됨(정기혜, 2007).
- 현재 2009 어린이 먹거리 사업단 세부과제(2-3)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산출·평가’ (강명희, 한국영양학회) 연구 수행 중임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지수 적용 주체 및 방법에 대한 논의

-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는 국가나 지자체 단위의 대규모 조사보다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학교나 동 단위에서 자체평가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도구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

2. 정책 추진방향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지수 개발·적용

-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에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

육청, 학교의 협력을 통해 사업통계와 지표를 활용하도록 추진

□ 포괄적인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관리 성과 지표의 개발 모니터링

- 2012년까지 주요 사업의 진척도와 수행정도 모니터링

□ 지속적인 평가지표의 개선 및 평가 실시

- 행정 수요, 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 지표의 주기적인 검토 및 보완 필요. 주기적인 평가를 통한 사업의 보완과 개선

□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 연구 강화

-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모니터링: 어린이의 식품 소비, 영양 위해성분 노출, 식행동에 대한 국가적인 대규모 조사, 연구 수행
- 소비자 태도 및 인식 조사
-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조사 연구: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 및 판매 현황, 식생활환경에 대한 조사 및 심층분석
- 영양성분 DB의 확충: 현재 우리나라의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서 불충분한 영양소인 지방산, 콜레스테롤 등의 영양소 DB 확충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 및 지속적인 DB의 보완작업 수행
- 어린이 식생활 정책의 영향평가: 어린이의 식품 섭취와 식환경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근거 중심의 영양정책 수립의 기본자료 마련 및 영향평가를 통한 개선사항 발굴 및 정책 보완

〈표〉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선정지표 (안)

정책지표	전략지표	대표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어린이 식생활 안전	식생활안전관리 지원수준	우수판매업소와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수준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및 재정지원율(전년도 대비 증가율)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관리율
	기호식품 안전관리수준	위해식품 수거·감시수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위해식품 수거·감사 부적합률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위해식품 감시·위반업소율
	단체급식 안전관리 수준	식품위생법 준수수준	학교 수 대비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비율
			어린이집 식품위생법 위반율
		급식안전관리 준수율	학교 매점 식품위생법 위반율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학교 식중독 발생률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평가기준 준수율
			학교급식 식중독 이환율
어린이 식생활 영양	결식 및 비만관리 수준	식품 접근성 확보수준	지자체 무상급식 실시율
		비만관리수준	비만율
	기호식품 영양관리수준	기호식품 영양관리수준	외식업소 영양성분표시 실시율
			품질인증받은 식품 건수
	단체급식 영양관리수준	식생활지도수준	건강친화기업 지정 수
			식생활지도 및 상담 정도
			지자체의 영양교육 및 홍보 노력 정도
		식단 관리	지자체별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화학조미료와 튀김류 사용 제한
			첨가당 함유 식자재 사용량
어린이 식생활 인지·실천수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 별법 인지수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인지수준	나트륨 함유 식자재 사용량
			친환경농산물 구매 지원
			학교급식식단 영양관리기준 준수도
	식생활안전관리 인지실천수준	위생관리 인식 실천수준	어린이먹거리특별법 인식도
			고열량·저영양 식품 인지도
			영양성분표시 인지 실천도
		영양균형관리수준	개인위생관리 인지 실천수준
			올바른 식품구매 인지 실천수준
			학교급식 위생관리 인식도
		영양균형관리수준	세끼 식사 섭취수준
			과일, 채소 및 흰우유 섭취수준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및 과자 섭취수준

자료: 강명희 등(2009).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산출·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용역연구사업 (연구진행 중)

○ 연차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세부사업	시행기간					추진 주체 및 참여기관
	~2009	2010	2011	2012	2013~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지수 개발·적용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지수 개발·적용 및 보완		➡	➡	➡	⇨	식품의약품안전청, 학계, 지자체
- 포괄적인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관리 성과 지표의 개발, 2012까지 주요 사업의 진척도와 수행정도 모니터링			➡	➡	⇨	식품의약품안전청, 학계, 지자체, 학계
•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 연구 강화 -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모니터링	⇨	➡	➡	➡	⇨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자체, 학계
-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조사 연구	⇨	➡	➡	➡	⇨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자체, 학계
- 영양성분 DB의 확충(지방산 조성, 콜레스테롤 등 포함)		➡	➡	➡	⇨	식품의약품안전청, 학계
- 어린이 식품소비 및 태도 및 인식 조사			➡	➡	⇨	식품의약품안전청, 학계
- 어린이 식생활 정책의 영향 평가 등				➡	⇨	식품의약품안전청, 학계

토 론 문

- 강명희 (한국영양학회 회장)
 - 강재현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교수)
 - 김승호 (서울시 식품안전팀장)
 - 김초일 (어린이먹거리안전관리사업단장)
 - 송성완 (한국식품공협협회 업무부장)
 - 이정기 (경북 식약품안전팀 사무관)
- (이상 가나다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비전, 목표 및 전략(안)의 검토 및 토의 내용

강 명 희

한국영양학회 회장, 한남대 교수

현재 제시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비전, 목표 및 전략(안)은 방대한 전략 목표와 세부사업들이 체계 있게 잘 정리되었으며,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시행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어린이식생활안전지수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 자로써 다음의 몇 가지 의견을 토의 내용으로 제시해 본다.

1. 본 종합계획을 접근하는 틀, 즉 본 계획개발의 근거로 사용한 개념적인 모형이 제시되 면 좋겠다. 로직모델을 이용하여 개인수준, 가정수준, 학교수준, 지역사회 수준, 제도/정책수준 등으로 분류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이럴 경우 학교수준은 교과부의 000로 가름 한다 등으로 설명 가능할 것이다.
2. 국가의 관련정책, 계획과 연계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필요하다.
 - 1) 막연하게 “학교수준”의 접근보다는 여기서는 “교과부의 000계획과 연계하여 전체적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도모하겠다” 등의 서술이 가능할 것이다.
 - 2)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식품안전종합계획”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 3) 어린이를 위한 다른 사업(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 사업 및 결식아동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전체적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등의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즉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것 보다는 다른 부처의 사업이 잘 시행되도록 지원해서 어린이 식생활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3. 1쪽의 어린이식생활 안전 종합계획의 전략목표 두 번째 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

- 어린이의 올바른 식품 선택 보장 --> **어린이의 올바른 식품 선택 및 바른 영양 보장**
 - 어린이의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기반 강화와 모니터링
4. 2쪽의 종합대책 전략 “3차안”에서 “제도/기반구축 및 모니터링”은 앞의 세 가지 영역과는 다른 차원으로 생각된다. 즉 “제도/기반구축 및 모니터링”은 앞의 세 가지 영역 모두에 해당되는 영역이므로 이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5. 3쪽의 추진방향(안)에서 “바른 영양”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의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효과적인 정보와 교육·홍보의 전달 확대...”는 “어린이의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위한 효과적인 **영양정보와 영양교육·홍보의 전달 확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6. 다음과 같은 과제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꼭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 1) “자료의 질 개선”: 어린이 식생활과 관련한 모든 통계자료의 생산, 품질관리, 분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필요
 - 2)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학부모, 지역상인, 생산자 (농민) 등의 참여확대를 위한 노력 (미국 local wellness policy 참조), 로컬 푸드 장려 등등
 - 3) “아침식사율 높이기 위한 지원”: 어린이들이 아침 식사 안하는 게 문제라는 것을 누구나 이야기하고 있으나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다. 결식에는 자발적 결식(다이어트 등 체중조절을 위한 청소년층의 굶는 행위)과 강제적 결식(재정적으로 혹은 가정적인 문제로 인한 원치 않는 결식)이 있는데 이 두 부분은 매우 다르게 접근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 및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추진목표 3. 접근성 제고에 넣었으면 좋겠다.
 - 4) “미래세대의 식이성 만성질환의 사전 예방”: 3쪽의 추진방향에 나와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포함시키고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세부추진과제가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즉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혈중 지질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현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에 대한 추진과제가 필요하다.

- 5) “비용편익 분석” 등은 모든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현재는 어린이 급식지원 센터, 어린이 영양교육 등에서만 제시됨) 따라서 이 부분을 제도/기반구축 및 모니터링으로 빼면 좋겠다.

7. 5~6쪽의 추진목표와 세부추진과제 관련하여

- 1) 2.1 에서 관련 인력 교육 훈련에서 가장 주요한 “보육시설”의 영양사가 빠져 있다. 그 외에도 푸드뱅크 등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 2) 3.2 첨가물 뿐 아니라 잔류농약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어린이 기호 식품 안심 확보” 라는 모호한 말 대신에) “식생활에서 오는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보호”라는 추진전략 밑에, 세부추진과제로는 “위해기능 영양성분, 잔류농약, 첨가물”을 모두 넣으면 좋겠다.
- 3) 3.4 밑의 세부추진과제 “취약계층 및 결식아동 급식의 위생 및 영양품질 개선”을 3.3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옮겨서, “저소득/결식 아동의 식생활 접근성 확대”로 하면 좋을 것이다.

8. 8~9쪽 추진전략 2.1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교육·홍보 강화와 실천기술 증진”에서

- 1) 세부추진과제에 “미디어, 소비자단체, 산업, 지역사회 부문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교육 역할 강화”가 있는데, 여기서 지역사회를 별도로 빼서 “지역사회에서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교육 강화”라는 세부 추진과제를 별도로 두는 것을 제안한다. 어린이 식생활 교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것 외에, 지자체의 지역 보건소를 통한 어린이 식생활 교육 및 학부모 교육도 중요하므로 보건소에 식생활 및 영양교육 예산과 정규직 영양사를 배치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강화 및 세부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

- 2) 식습관은 어릴 때 형성되어 평생을 갈 수 있으므로 어릴 때의 식습관 교정 및 식생활 교육이 중요한데, 현재 학교 체제에 들어가 있지 않은 어린이집, 유아원 등에서 식생활 교육 및 영양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아원과 유치원 등에 대한 예산지원, 인력(정규 영양사 배치)지원 및 학습교재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며 이 부분이 세부추진과제에 어떤 방식으로든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3) 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교육은 현재 “가정에서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부모 교육·홍보”라는 이름으로 추진과제에 들어있는데 학부모, 특히 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교육을 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학교에서의 학부모교육과 함께 각 지역사회 보건소에서 정규영양사의 주도하에 지역 주민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영양지도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9. 12쪽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안) 추진일정에 관련하여

- 1) 13쪽 미디어, 소비자단체, 산업, 지역사회 부문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교육 역할 강화 중 맨 밑의 지역사회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교육 역할 강화의 일정이 2012년으로 미루어질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 부분은 학교에서의 어린이 식생활 교육과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적어도 2010년부터는 실시되도록 일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 2) 16쪽의 세부사업 중 어린이의 건강한 식품선택의 접근성 향상 부분에서 학교 건강매점 사업 추진 일정도 현재의 2011년보다는 더 당겨서 2010년부터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학교 건강매점사업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시행해본 경험이 있고 평가가 좋았으므로 몇 가지의 문제점을 개선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된다.
- 3) 마찬가지로 같은 쪽의 맨끝줄 취약계층 및 결식아동 급식의 위생 및 영양 품질 개선 사업도 현재 제시된 2012년보다 좀 더 당겨서 2010년이나 혹은 2011년에 시행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어린이 식생활안전 주요 과제와 종합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

강 제 현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2008년 3월 21일에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특별법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유관 부처가 어린이 및 청소년 식생활 안전관리의 목표와 추진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국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전반적으로 잘 세워지고 균형 잡힌 종합계획입니다만 몇 가지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이라는 추진목표 아래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미디어 환경 조성’이라는 추진전략이 있고, 이의 세부추진과제로 ‘방송 및 비방송 광고 식품업체 자율규제 도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해당 세부사업들이 대부분 식품업체의 자율규제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정부 주도의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국외의 사례로 볼 때, 자율규제만으로는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미디어 환경 조성이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 아니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포화지방, 소금 또는 설탕이 과다하게 함유되어 있는 식품들과 패스트푸드의 광고를 제한하는 정책을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 규제는 주로 16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로 인해 연간 3,900만 파운드의 광고비 감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광고 규제가 식품업체와 대중매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측면 때문에 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흡연 광고 규제와 마찬가지로 고열량·저영양 식품 과다 섭취가 어린이들을 비롯한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고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사실과 광고 규제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근거로 미루어볼 때 이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방송 및 비방송 광고 식품업체 자율 규제와 더불어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의 어린이 프로그램 시간대 제한과 같은 대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이라는 추진목표 아래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라는 추진전략이 있고, 이의 세부추진과제로 ‘식품산업체의 건강한 식품 생산의 점진적 확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부사업들의 제목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업체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고영양·저열량 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 세제 혜택,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이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을 고열량·저영양 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건강세(또는 비만세)를 부과함으로써 해결하는 방안처럼 보다 실제적인 세부사업이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본 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중요한 선결조건은 이러한 정책 수행 과정에서 식품업체들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식품 표시 등의 새로운 정책 변화 시 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책 변화에 따르는데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 표시 등의 제도 변화는 연 1회 정도에 모여서 실시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는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2008년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과 이번에 수립되는 국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 종합계획은 이제 막 시작 단계입니다. 초기에는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에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입니다. 시행 과정에서 운용의 묘를 발휘하고 일부 수정 및 보완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 어린이 불량 먹을거리 근절사업 추진 성과와 건의 의견

김 승 호

서울시 식품안전팀장

어린이 불량 먹을거리 근절사업 추진성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시행('09.3.22) 100일이 경과됨에 따라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어린이 불량 먹을거리를 퇴출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통해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

☐ 학교 현황

2009. 3월

합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교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생 수
1,306	1,390,298	584	645,027	381	369,497	313	369,802	28	5,972

☐ 추진 배경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 팽배
- 학교 주변 먹을거리 관리 취약
- 어린이 영양 과잉 및 결핍 공존
- 단체급식의 보편화와 위생 및 질적 측면의 문제 발생
- 지속적인 식품안전사고 발생으로 불안감 증폭

☐ 추진 성과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발대식 : 종로구 창신초등학교 09. 3.12

- 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 실태조사 결과(12,385개소)
 - 업종별 : 문구점 1,318, 분식점 5,315, 슈퍼마켓·편의점 4,471, 기타 1,281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구성·운영
 - 초등학교 584개교 4,515명 (학교별 6-10명 내외)
 -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지도·계몽 활동(연인원 54,832명)
 - 학생 등·하교시 식품취급업소에 지도·계몽 및 점검 실시
 - 지도·계몽 기간 : 2009. 3.23 ~ 6.30(3개월) · 지도·단속 전환 : 2009. 7. 1 ~ 계속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100일 동안 지도계몽 활동 실적

- 무신고 업소 영업신고 : 141개소
- 노점상등 자진 철거 : 53개소
- 슬러쉬, 과자뽑기 자판기 등 자진 철거 : 167개소
- 문구점에서 식품판매 포기 : 106개소
- 무신고 제품, 유통기한 경과 제품 등 압류폐기 : 731건 313kg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 1,306개교 2,540개소
 -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 2,208(7월중 완료 예정)
- 어린이 「식품안전 동아리」 모임 운영 지원 : 25개교
 - 초등학교의 자율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험학습 실시
 - 건강저해 식품에 대한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예정)
 - 학교별로 1개소 시범 지정 (1,306개소)
-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위생환경 개선 지원
 - 시설개선이 필요한 취약업소에 대한 지원 (업소별 50만원, 총 3억원)
- 학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집중 지도점검('09. 1~2월, 7월중)
- 어린이 식품안전버스 운영 (8월~)
 - 식품안전 및 기초 영양지식 등을 실험,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
 - 어린이들의 식습관, 식행동 개선·유도

- 아파트, 놀이공원, 유원지등 (토·일·공휴일 운영)
- 식품안전 인식도 설문조사(7월중)
 - 조사대상 : 2,000명(초등학생 1,000,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1,000)

□ 홍 보 내 용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교육자료 제작 : 7,000부
- 식품취급업소 가이드 북 제작 : 35,000부
- 초·중학생용 만화(학교 앞이 확 바뀌었어요) 및 CD 제작 : 60,000부

□ 추진시 애로사항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의 잦은 계도 활동으로 영업주의 항의
- 슬러쉬, 과자뽑기 자판기 등 업종이 다양하여 신고업무 곤란
- 소비자 식품취급업소의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인식 부족

□ 건 의 사 항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시설, 인건비 지원
-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법령(용자 → 소규모 업소 무상지원) 개정 필요
- 문구점에서 식품 진열·판매·취급 제한 규정 요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안)에 대한 소고

김 초 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영양정책센터

그 어떤 국가나 시대에도 그 나라 어린이의 건강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없고, 보건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만큼 절실하고 절박하게 어린이의 건강 확보와 관리가 필요한 나라도 드물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속도의 고령화 진행으로도 모자랐는지 우리사회의 출산율 감소는 지구촌 최고의 ‘저출산 국가’라는 그리 훌륭하지 않은 꼬리표를 우리에게 달아 주었고, 멀지 않은 미래에 실질적인 인구 감소가 예측되는 만큼, 미래 국민인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이 곧 우리 국가의 미래 건강이기도 한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어린이 건강 확보를 위한 첨경인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 계획 마련은 그 과정부터 결과물까지 당연히 여러 분야의 여러 관점에서 검토되고 의견 수렴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도 오늘 “어린이 식생활 안전 주요 과제와 종합계획 수립 방향 구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마련된 것은 뜻 깊은 일이라고 하겠다.

주제발표를 통해 제시된 2009-2012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안)은 그 기본 시각과 추진 방향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설정되었다고 판단된다. 책임연구자와 여러 전문가들께서 고민하시고 마련하신 내용인 만큼, 깊이 연구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감히 거들 말은 없겠으나, 그저 작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첨언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우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실행에서 직·간접적으로 가장 많은 역할을 해야 할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이 지자체들의 담당 인력과 예산 및 관련 인프라의 확보(또는 구축)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올바른 식품선택 역량 배양을 위한 식생활 교육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그 대상인 어린이와 부모를 교육함에 있어 전형적인 「교사/전문 강사 ⇒ 어린이/부모」의 형태가 아닌, 또래 활용 등의 보다 user-friendly한 접근 방법을 염두에 둔 세부 과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최근 농림수산물식품부의 식생활교육지원법이 통과되면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사업 입찰을 통해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으나, 그 내용과 방향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에서 추구하는 방향과는 전혀 달리 우리 농산

물의 소비 촉진 홍보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로부터 확실하게 차별화시켜 우리 식생활 교육의 건강 확보/증진 측면의 접근을 부각시키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식생활 교육을 위해 학교라는 장(場)과 학생들에게 접근함에 있어 교과 내용으로 반영하는 방법이 거론되어 왔으며,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조 및 공조가 요구되나 아직까지 그 진행이 그리 희망적인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식생활 교육을 위해 일정 시수를 따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보다는 교과서 집필진에 대한 접근 등과 같은 우회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바와 같이 어린이 식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체인 식품산업계와의 협조/공조가 될 것이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확보와 관리를 가능케 할 수 있는, 보다 산업현장 친화적인 현실감 있는 세부과제의 발굴을 위해 산업계의 아이디어와 의견 제시 등 지원을 기대해 본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성 완
한국식품공업협회

1. 종합 의견

-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위한 업계의 신호등제 반대와 자율적인 실천 의지 표명이 일정 부분 (반대의견 비수용, 자율 시행 부분 반영) 반영되었으나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임.
-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 민관협력을 기본 접근 방향으로 삼아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업계의 참여 및 의견수렴과정, 정책평가 피드백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판단

2. 세부 의견

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전체 개념 요약 부분

- 단계별 기대효과 관리 필요
 - 주요 전략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최종적인 효과(benefit)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 기대효과 서술을 통해 보다 종합계획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 평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식품업계와의 상생에 대한 내용 필요
 - 전략이나 세부추진과제 상에서 식품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간과됨. 어린이 건강관리와 더불어 산업적 측면에서 식품업계의 발전방향이 함께 논의될 수 있어야 함.

2) 세부 추진과제 부분

-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 '추진 전략별 세부사업(안)'에 제시된 '세부 추진과제'와 '세부 사업'부분에서 일부 내용이 세부 추진 과제와 세부 사업 간의 차이가 없어 분류가 의미 없음.
- ⇒ 대표적으로 2.1 '미디어, 소비자단체, 산업, 지역사회 부문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교육 역할 강화'(이상 세부 추진과제)의 내용을 세부 사업 파트에서 각 주체별로 구

분해서 정리한 수준.

2-1. 어린이와 부모에 대한 올바른 식생활 교육/홍보 강화와 실천 기술 증진

○ 어린이-학부모 중심의 교육 필요

- 핵심 주체를 알 수 없음: 교육 부문에서 어린이, 학교, 학부모, 미디어, 소비자단체, 산업, 지역사회 등 너무 많은 주체들을 대상으로 세부 과제를 설정.
 - 가정에서의 교육과 아울러 학교 교육도 핵심사업에 포함되도록 해야 함.
 - 가정에서의 교육이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식생활 교육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가정에서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학교나 미디어, 산업, 소비자단체, 지역사회 등이 돕는 구조가 되어야 함. 가정에서 바른 영양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교가 가교 역할을 하는 '어린이-부모-학교' 간의 연계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임
 - 가정 내 식생활 영양교육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제안함: 특히, 부모를 통한 잘못된 정보 전달 방지 및 임의적인 비과학적 영양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정 내 영양교육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어떠한 개선이 필요할 지 보다 구체화하여 부모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음. (조사 항목 예시 부모들의 영양교육 지식수준, 영양교육 기준, 내용(방법) 등)
- ⇒ 조사는 업계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함: 정부 주도로만 진행할 경우 신뢰성에 문제 생길 수 있으며,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사의 실효성 문제와 연관됨.

○ 교육 주체 간 시너지 형성에 주력해야 함

- 교육 역할 강화 관련 세부 내용 모호함: 현재는 미디어, 소비자단체, 산업, 지역사회 부문 등 많은 주체들이 어린이 영양교육 역할을 강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역할이나 주안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개별 주체간 교육의 시기, 주안점을 전략적으로 제시하여 전체적인 시너지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미디어, 소비자단체, 산업, 지역사회의 교육 역할 강화 시기가 너무 늦음: 가정에서의 교육가정에서의 부모 교육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시간 상으로 차이를 두고 진행할 경우, 교육 초기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음.

2-3. 알기 쉬운 영양표시제의 단계적 도입

○ 업계와 공조하려는 노력이 긍정적임

- 표시제 도입을 위한 산업체 지원, 산업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 업계와의 교류와 협력을 이루어 나가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3-2/3-4 당, 나트륨 등 위해기능 영양성분 저감화

○ 어린이 기호식품과 어린이 단체급식 부문에서의 통합적인 노력은 바람직함.

- 다만, 정확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른 인체 위해 가능성을 검토하여 저감화에 대한 과학적 기준 제시가 필요함.
- 무조건적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저감화는 현실적으로 건강한 식생활에 미치는 효과가 적을 수 있음: 저감화를 했지만, 그만큼 섭취를 많이 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경북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현황과 건의 의견

이 정 기

경상북도 식약품안전팀 사무관

I.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

1. 추진현황

□ 경상북도 학교 현황(2008년)

○ 학교 수 : 972개교(초 497, 중 281, 고 194)

구분	계	1~100명	101~300명	300명 이상
계	972	393 (40.4%)	160 (16.5%)	419 (43.1%)
초등학교	497	249 (50.1%)	66 (13.3%)	182 (36.6%)
중학교	281	121 (43.1%)	49 (17.4%)	111 (39.5%)
고등학교	194	23 (11.9%)	45 (23.2%)	126 (64.9%)

○ 학생 수 : 384,298명(도 전체인구의 14.4%)

- 초등학교 187,309명, 중학교 100,182명, 고등학교 96,807명

□ 시범사업 기간 및 지역

【1차(2007) 시범사업】

○ 기간 : '07. 7 ~ '07. 11(5개월)

○ 지역 : 5개 시·군(경주시, 구미시, 경산시, 군위군, 청도군)

○ 대상학교 : 5개 초등학교 6,341명(도내 전체초등학생의 3.4%)

○ 대상업소 : 46개소

- 일반음식점 11, 휴게음식점 7, 문구점 15, 슈퍼마켓 11, 기타 2

【2차(2008) 시범사업】

○ 기간 : '08. 3 ~ '08. 11(9개월)

○ 지역 : 6개 시·군(경주시, 구미시, 상주시, 경산시, 군위군, 청도군)

○ 대상학교 : 6개 초등학교 7,349명(도내 전체 초등학생의 3.9%)

○ 대상업소 : 54개소

- 일반음식점 14, 휴게음식점 6, 문구점 19, 슈퍼마켓 10, 기타 5

□ 시범사업 내용

○ 시범사업 지역 내 대상업소 선정

-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문방구, 소형마트 등 식품판매업소 및 분식, 튀김 등 조리 식품 판매업소 파악 및 대상업소 선정

○ 조리식품 판매업소 및 식품판매업소 관리

- 시·군에 명부를 비치하고 점검·기록 지속적으로 관리

○ 전담관리원 지정 및 어린이 기호식품의 모니터링 실시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을 갖춘 자를 전담관리원으로 선발·위촉
- 문방구, 소형마트 등의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부정·불량식품 및 비위생적인 조리·판매식품의 위생실태 모니터링
- 자유업에 해당하는 영업소에 대한 현장교육 및 계도 실시

○ 우수판매업소 등 지정

- 식품안전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가 신청 시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지정
- 우수판매업소라는 로고를 간판·광고에 사용토록 함

○ 위생시설 개선 등 지원(식품진흥기금 활용)

-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기 위하여 시설개선 등을 요청한 업소에 대해 냉장고 및 진열대 설치 지원

2. 추진실적

【1차(2007) 시범사업】

○ 시범사업 지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선정

- 5개 지역 : 46개 업소(일반 11, 휴게 7, 문구점 15, 슈퍼 11, 기타 2)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인 지정 : 13명

○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계몽 : 20회

○ 수거·검사 및 모니터링

- 수거·검사 : 8회 40건(적합 40건)
- 모니터링 : 22회

○ 교육·홍보

- 영업주 대상 교육·홍보 : 14회 120명(연인원)
- 학생 대상 교육·홍보
 -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 : 5개 시범 초등학교(순회교육)
 - 경북도 주관 : 5개 시범 초등학교(학생 수 6,341명)
 - *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 등을 수록한 알림장 제작·배부(6,500부)
- 식품진흥기금 사용 : 5,600천원
 - 알림장 제작(경북도) : 5,000천원
 - 손소독기 설치(경산시) : 600천원

【2차(2008) 시범사업】

- 시범사업 지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선정
 - 6개 지역 : 54개 업소(일반 14, 휴게 6, 문구점19, 슈퍼 10, 기타 5)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인 지정 : 16명
- 우수판매업소 지정 : 23개소
- 홍보용 캐릭터·엠블럼 개발
 - 품목: 캐릭터 1종(안전이와 탐견이) / 엠블럼1종(SAFE FOOD)



- 활용: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 순회 전시교육,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 및 식품관련 행사시 자료 활용
- 교육·홍보
 -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 전시·체험 교육(어린이 먹거리 식품안전 교실)
 - 사업기간 : 2008년 5월~10월
 - 교육대상 : 20개소 (초등학교 15, 고속도로휴게소 5)
 - 교육인원 : 25,100명
 - 교육 및 전시 내용(눈높이 맞춤교육 및 홍보·전시관 운영)
 - *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 및 위반제품사례

- * 제조일자,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확인
- * 바른 손씻기 요령 교육 및 식중독예방 현장체험
- * 길거리 음식의 위생상태 및 영양성분(당류, 트랜스지방 등)
- * 사행심 조장식품, 부패식품, 유통기한 변조식품 등 전시·홍보
- 언론보도
 - 연합뉴스(2008.5.16), 영남일보(2008.5.16), 경북일보(2008.5.16), MBC(2008.5.16), 지역KBS(2008.5.16), 서울신문(2008.5.17), 조선일보(2008.5.19), 서울일보(2008.5.19), 연합뉴스(2008.5.30) 등

○ 식품진흥기금 사용 : 25,600천원

- 캐릭터·엠블럼 제작 : 5,000천원
- 보호구역 및 우수판매업소 안내표지판 제작 : 2,600천원
- 홍보물(알림장, 노트, 스케치북 등) 제작 : 18,000천원

3. 사업평가

□ 총 평

-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 안전 먹거리의 중요성을 영업주, 어린이 및 학부모에게 인식시켜 주는 긍정적 효과를 얻음
- 학교 주변 문방구 및 슈퍼 등은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소인 점과 시범사업 시행 도 및 시·군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와 본 사업에 대한 열의 부족으로 충분한 사업 효과를 얻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잘된 점

- 담당자 및 전담관리인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어린이 안전 먹거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어린이의 식품소비 행태 변화에 기여함
- 어린이 먹거리 식품안전교실 전시·체험교육을 통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물(알림장, 노트)을 제작·보급하고 눈높이 맞춤 교육 및 홍보·전시관 운영함으로써 어린이, 학부모, 학교 관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음.
- 식품과 식품외 제품을 구분 진열하고 바닥에 진열하였던 제품을 진열대에 진열하게 되는 등 부분적이거나 환경개선 효과를 얻음.

□ 미흡한 점 및 애로사항

-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의 대부분이 문구, 완구점을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과자류 등을 취급하는 영세업자가 많아 영업주의 적극적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움(우수판매업소 지정 실적 저조)
-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계 및 영업주의 의지 부족 등으로 시설개선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하기 어려움(문구점, 슈퍼마켓 등 자유업은 식품위생법상 진흥기금 지원대상업소로 보기 어려움)
-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사업수행에 따른 인센티브 부족으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경북, 충청을 비롯한 도의 도농복합도시 및 군의 읍면지역 초등학교는 학생 수의 급감으로 폐교 도는 인근 학교와 통합되고 있는 실정으로 초등학교 주변에는 극소수의 영세한 식품판매업소(문방구와 생활용품 판매와 겹쳐 일부 과자류 취급)가 있거나 아니면 전혀 없는 실정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움(경북 전체 초등학교 497개중 50.1%인 249개가 100명 이하의 학생 수 학교임)

II. 건의사항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련
 - 도시지역 및 농어촌 읍면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시책 추진
 - 학생 수가 극히 적어 어린이 식품판매업소가 없거나 한두개의 영세한 업소만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됨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관련
 - 표지판 제작을 위한 국비지원 요청
 -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은 지속적인 과징금 수입 감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및 기타 사업비 증가로 재정 건전성 악화
 -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표지판이 부착된 기둥을 활용하여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부착하면 예산 절감 가능
- 식품위생법 제도권 밖의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 관련
 - 문방구, 슈퍼마켓 등 식품위생법상 진흥기금 지원대상업소로 보기 어려운 우

수판매업소에 대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시설 개·보수비용을 국비로 보조하는 등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강한 의지 필요

○ 어린이 기호식품의 원천적인 안전관리 관련

- 생계형 영세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서 실제 판매되고 있는 저가(100원~300원 정도)의 기호식품의 제조업소에 대한 근원적인 품질 안전관리가 관건 ⇒ 품질인증 및 건강친화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현황 파악 및 원천관리대상 제조업소로 시·도 및 지방식약청이 공조하여 집중관리

○ 지자체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분임 토의 안내

1. 분임 토의 그룹 구성

【분임 토의】			
1분임 (식생활안전 및 위생관리 부문)	2분임 (식생활 홍보·교육 및 식품선택 부문)	3분임 (안전한 식품공급 부문)	4분임 (종합계획 틀, 제도기반, 모니터링 등)
대전, 강원, 충북, 전남, 경북	대구, 광주, 충남, 전북, 경남	부산, 인천, 경기, 제주, 식품산업계	전문가, 서울, 울산 및 식약청지청

2. 분임 토의 가이드라인

1) 분임 토의 대표를 분임 조에서 선정

대표 및 기록 정리자 등

2) 분임 토의 내용

- 1분임 :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위생관리 부문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 세부사업 정책추진 방향, 연차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검토 및 건의사항 제시

- 2분임 : 어린이 식생활 교육홍보 부문

어린이의 올바른 식품선택 보장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 세부사업 정책추진 방향, 연차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검토 및 건의사항 제시

- 3분임 : 안전한 식품공급 부문

어린이의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 세부사업 정책추진 방향, 연차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검토 및 건의사항 제시

- 4분임 : 종합계획(안) 틀, 제도 기반 및 평가·모니터링 부문

전체 종합계획(안)의 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기반 강화 및 모니터링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 세부사업 정책추진 방향, 연차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검토 및 건의사항 제시

3) 16일 오전에 분임토의 결과 발표 및 종합



Memo

Memo

